

민간단체의 공익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익법인제도에 관한 연구

이 순 태



연구보고 2013-09

민간단체의 공익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익법인제도에 관한 연구

이 순 태



민간단체의 공익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익법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s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for promoting public interest
activities by the Private Sector

연구자 : 이순태(연구위원)

Yi, Sun-Tae

2013. 10. 31.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종래 행정에 의해 수행되었던 공익활동의 많은 부분들이 시민단체 내지 민간단체에 의해 자발적 내지는 행정의 위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민간단체는 행정과 공사협동 내지는 거버넌스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그 내부의 운영 내지는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시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행정으로부터의 각종 지원에 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증가되고 있음
- 민간단체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공익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익법인에 관한 법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공사협동을 통한 공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공익성과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현대 행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통한 공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민간단체의 현황 및 개념

○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 및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첫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둘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셋째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넷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다섯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여섯째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과 같은 요건을 갖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라 함
- 비영리민간단체는 2012년 말 현재 10,889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1,319, 지방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9,570로서 지방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전체의 88%임.
- 중앙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1,319중에서 법인과 비법인 단체는 각각 774개, 545개로 비법인 단체의 비율이 전체 41%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9,570중에서 법인과 비법인 단체는 각각 1,703개, 7867개로 비법인 단체의 비율이 82%를 차지

○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현황

-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민법 제32조)
- 우리 민법의 법인개념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어,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비공익법인도 포섭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써 비영리법인을 바로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반면에, 일본민법은 공익·비영리법인을 규정한 결과, ‘비공익·비영리법인’은 민법을 근거로 설립할 수 없게 된다는 차이가 존재
- 민법 제32조의 ‘주무관청의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어, 이를 준칙주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음
- 현행 비영리법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분리하여 2단계의 법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서 비영리성에 대해서는 준칙주의를 관철하고, 두 번째 단계로서 공익성을 인정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를 설계해야 함

□ 일본의 공익법인제도 개혁과 세제

○ 공익법인제도 개혁의 의의

- 일본 민법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은 주무관청이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를 주문관청제도라 함. 이러한 주문관청제도는 설립시점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성의 판단에 관한 자문을

받지 않으면 민간이 새로이 설립허가를 취득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주무관청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어 있었음

- 일본의 공익법인제도개혁에서는 주무관청제가 가진 폐해를 제거하고, 법인격의 유무를 일정한 우대조치와 분리하여, 공익성의 유무에 관련없는 새로운 비영리법인제도를 창설하였음
- 일본의 공익법인 개혁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공익인정등 위원회와 합의제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인정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하도록 한 점. 즉 행정청이 재량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던 허가주의 원칙을 폐지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익인정등 위원회로 하여금 실질적인 공익성인정을 하도록 한 점

□ 영국의 Charities Act

- 영국에서는 비영리 섹터를 볼런터리 섹터(voluntary sector)라 하지만, 그 중심적 존재에 있는 조직체가 체리티임. 영국에서 체리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체가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활동이 사회의 이익(public benefit)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으며,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조직체 중, 「체리티위원회」(the Charity Commission)에 신청하고 등록을 인정받아, 체리티 자격(charity status)을 부여받은 것, 즉, 등록된 체리티(registered charities)를 일반적으로 체리티라고 부르고, 체리티 전체를 총칭하여 체리티 섹터(charity sector)라 함

○ 위원회의 책무와 권한

- 위원회는 국왕을 위해(on the behalf of the Crown), 즉 국가를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하며(제13조제3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대신, 어떠한 정부부처로부터도 지시(direction)나 통제(control)를 받지 않음(제13조제4항).
- 위원회는 내무대신에 의해 지명되는 의장과 4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통산 10년을 넘어서도 아니 됨
- 위원회는 조직에 대한 체리티 인정, 체리티의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체리티의 행정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조사하며, 부정행위 내지는 경영실수에 대한 규제책이나 예방책의 강구, 모금활동의 인가서의 발행 또는 그 계속의 판단, 위원회의 기능이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과 관련되는 정보의 입수, 평가, 발신, 위원회의 기능이나 목적 수행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정부의 대신에 대해 정보제공, 조언, 제언을 역할로 함

□ 공익법인제도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 공익사업의 유형에 관한 기준을 공익사업 인정기준으로서 소극기준으로 설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바꾸고, 공익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정책이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상황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유형을 자유로이 설정하고 구체적 지원사업 선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선

-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다년간에 걸쳐 높이고,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사업의 유형을 매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공익사업 유형을 일정기간 정해두고 세부 사업내용만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제개선
- 시민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행정주체가 지원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확대하여 지역에 밀착한 시민공동체로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보충성의 원칙’ 관철
- 안전행정부와 시·도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업무를 단순히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유형의 결정부터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그리고 사업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인큐베이터의 역할부터 육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관리·감독 및 정보의 제공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와 민간의 중간적 위치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지위 보장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평가가 실제로는 외부용역기관에 의해 실시되거나,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구성한 평가단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서 평가주체 등에 관한 규율밀도를 강화하여 평가에 관한 객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되도록 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의 시민일반으로부터의 신뢰

성이 강화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 될 수 있음

- 안전행정부 또는 시·도의 지침에 정해져 있는 평가지침에는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바, 평가절차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법규명령으로 규율

○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행정청의 재량이 축소된 준칙주의로 개정할 경우, 비영리법인은 공익과는 분리된 순수한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 함

○ 공익법인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공익목적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말고, 비영리법인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서 일정한 공익인정기준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는 법체계로 정비
-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 순수한 비영리법인으로 분화되고, 공익법인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공익성인정은 영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은 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인정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이나 권고에 그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보제공 등으로 확장하도록 할 필요

- 공익인정에 관한 이의제기 또는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한 소송절차를 창설하거나 기존의 항고쟁송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필요

Ⅲ. 기대효과

- 행정법관계의 일방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공익활동을 수행하기도 하는 민간단체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변용하는 민간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학술적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
- 민간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

▶ 주제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공익사업, 체리티,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공익인정위원회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of this study

- NPO, Non-profit Incorporate, NGO, Charities, and so on have built effective capacities to carry out public affairs in South Korea and the state starts to more and more interact with those
- Although Non-profit organization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to engage in the public affairs and cooperate with public administrations, there has been an increased demand for transparency and the confidence in the organizations
- In order to ensure the freedom of the activities and establishments of the organizations and make the organizations more reliable and transparent, it is necessary to research institution on the new Non-profit Incorporate in South Korea

Purpose of this study

- Firs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islations concerned Non-profit Incorporate in order to propose to amend civil act of South Korea

- Seco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out some suggestive points from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Japan and UK
- Finally,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of legislation concerning transparency and confidency in the NPO, Non-profit Incorporate, Charity

II. Main Contents

- The concept of NPO and NGO in the 'Assistance for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 and The status in South Korea
- NPO and NGO in the 'Assistance for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 mean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whose main purpose is not to make a profit, but to perform public-interest activities, satisfying these requirements:
 1. Direct beneficiaries of its business shall be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2. No profit shall be distributed among its members
 3. It has not been actually established or operated primarily to support or assist any specific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in election or to spread a creed of any specific religion
 4. The number of its regular members shall be at least 100
 5. It has actual results from public-interest activities for the preceding one year or more

6. Where it is not a juristic person but an organization, it shall have a representative or manager.

- There are 10,889 registered organizations including 1,319 registered with the minister who supervises its main public-interest activities and 9,570 registered with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or Do Governor at end-December 2012.

The concept of Non-profit Incorporate in the 'Civil Act' and Status in South Korea

- Non-profit Incorporate in the 'Civil Act' means an association or foundation relating to science, religion, charity, art, social intercourse, or otherwise relating to enterprises not engaged for profit or gain, satisfying the pre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Civil Act Article 32).

- The concept of Non-profit Incorporate in South Korea does not matter the organization's purpose of public-interest. Thus Non-profit Incorporate in South Korea can not be regarded as a organizations performing public activities.

- It is necessary to design legislative system which separate public interest into the present legislative system on the Non-profit Incorporate based on the Civil Act.

Analysis of Legislative improvement

○ Assistance for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

- The Change of the meaning on the Type of Public-interest Business
- The Expanse of the Subject Subsiding NPO, NGO
- The Empowerment to A Committee for Selection of Public-interest Business
- Civil Act on Non-profit Incorporate
- Separation public interest into the present legislative system on the Non-profit Incorporate based on the Civil Act.
-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 It is necessary to inaugurat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Commission, which is a charitable status recognition committee as Korean version of The 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 Wales

III. Expected Effect

-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on on the promoting settlement and interchange between urban-rural communities
-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Non-profit Corporation through the promoting the transparency and public confidence in it.

➤ **Key Words :** NPO, Non-profit Corporation, Public Interest Incorporated Associations, Public Interest Incorporated Foundation, Public Benefit, Public Confidence, Charities, Public Interest Corporation Commission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11
제 1 장 서 론	21
제 1 절 연구의 의의	2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22
제 2 장 민간단체의 현황 및 개념	23
제 1 절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 및 현황	23
1.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	23
2.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25
3.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현황	34
제 2 절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현황	40
1. 비영리법인의 개념	40
2. 비영리법인의 등록현황	46
3. 공익법인의 의의	48
제 3 장 일본의 공익법인제도 개혁과 세제	51
제 1 절 일본의 공익법인제도 개혁	51
1. 공익법인제도 개혁의 의의	51
2. 경 위	55

3. 공익법인 감독	57
4. 공익인정 등에 관한 심의	59
제 2 절 일본의 공익법인에 관한 세제 개정	63
1. 공공법인 등 비과세의 개정	65
2. 기부금공제의 개정	70
3. 특정퇴직금공제단체의 요건 개정	73
4. 국가 등에 대해 재산을 기부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의 비과세제도의 개정	77
제 4 장 영국의 Charities Act	99
제 1 절 체리티의 정의와 체리티법	99
1. 체리티의 정의	99
2. 체리티법	100
3. 2006년 체리티법의 구성	103
제 2 절 2011년 체리티법의 주요내용	105
1. 2011년 체리티법의 구성	105
2. 체리티의 요건 등	108
3. ‘체리티’와 ‘체리티 목적’의 의미(meaning)	111
4. 체리티 위원회의 책무와 권한	116
5. 체리티 법원	120
6. 체리티 운영을 위한 주요구조	121
제 5 장 공익법인제도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	125
1.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125
(1) 공익사업 유형의 유연화	125

(2) 보조금의 지원주체 및 선정주체	126
(3) 사업평가제도의 개선	127
2.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128
3. 공익법인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제	130
(1) 공익목적사업의 종류와 범위 확대	130
(2) 공익인정기준의 설정	132
(3) 공익인정위원회의 창설 및 권리구제 제도	137
참 고 문 헌	139

【 부 록 】

1.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145
2. 공익인정등위원회령	179
3. 공익인정등위원회사무국조직규칙	181
4. 공익인정등위원회운영규칙	18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종래 행정에 의해 수행되었던 공익활동의 많은 부분들이 시민단체 내지 민간단체에 의해 자발적 내지는 행정의 위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민간단체는 행정과 공사협동 내지는 거버넌스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그 내부의 운영 내지는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시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행정으로부터의 각종 지원에 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증가되고 있다.

민간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나, 이러한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전환되는 법제도 및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구분하는 법시스템이 부재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비영리법인 중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공사협동을 통한 공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공익성과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현대 행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통한 공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이 연구는 민간단체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상의 민간단체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다양한 단체가 법제도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단체를 인정하는 근거법률의 목적, 인정요건, 관리기관의 분산 등의 요인으로 민간단체의 현황 및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다. 또한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업무가 재구성됨으로 인하여 각 부처별 소관 단체의 현황이 2012년과 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2년 말 기준으로 비영리법인 내지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민간단체에 관한 국내법제를 소개하고, 외국법제로서 일본의 공익법인제도 개혁과 관련 법제를 소개하며, 영국의 체리티법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익법인제도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민간단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민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 2 장 민간단체의 현황 및 개념

민간단체는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아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각 현황과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절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 및 현황

1.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한 지원을 받으려면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하고,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동시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4조).

위와 같은 등록은 행정으로 하여금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제7조 지원사업의 선정 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으로 참가 및 기부를 유인할 수 있게 된다.

(3)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1) 지원의 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할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이러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국가 등에 의한 민간공익활동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행·재정적 지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3)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대상으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제6조제1항, 제2항),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매년 결정하여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제7조제1항, 제4항).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공익사업 유형내에서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하고,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이루어진다(제7조제2항).

4) 조세의 감면이나 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제10조, 제11조)

2.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등의 핵심은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요건, 선정 절차 등의 주요사항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민간단체는 안전행정부장관에 있어서는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시·도지사에게 있어서는 관할 구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시·도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이다.¹⁾ 지원을

1)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408호 ‘201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2013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042호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의 유형

1) 공익사업의 유형에 관한 일반기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7조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바, 첫째,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동 시행령 제5조제1호), 둘째,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동 시행령 제5조제2호), 셋째,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동 시행령 제5조제3호)이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동 시행령 제5조의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익사업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위 일반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결정한 사업유형이 일반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 상호간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소극기준으로서의 사업중복성과 적극기준으로서의 사업보완성의 관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7조를 공익사업의 인정기준으로 조제목을 정하고, 공익사업의 소극적 인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013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수시공모 공고’ 참조.

2) 사회적 수요과약을 통한 공익사업의 유형 결정

위의 공익사업 유형에 관한 일반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7조제1항).

다만, 법상으로는 사회적 수요과약의 방법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서, 안전행정부와 각 시·도 마다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안전행정부의 공익사업 유형

안전행정부의 경우에는 수요조사에 관한 설문을 바탕으로 공익사업의 구체적 유형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10년간 공익사업 유형은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

<표 1> 2003~2013년 연도별 공익사업 유형³⁾

유형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국민 통합	국민 통합	국민 통합	사회 통합과 평화	사회 통합과 평화	사회 통합과 평화	100대 국정 과제	사회 통합과 평화 증진	사회 통합과 취약 계층 복지 증진	사회 복지과 취약 계층 복지 증진	취약 계층 복지과 자원 봉사·기부 나눔 확산
2	문화 시민 운동	문화 시민 운동·투명 사회 만들기	문화 시민 사회 구축	문화 시민 사회 구축	문화 시민 사회 구축	시민 사회 문화 기반 구축	저탄소 녹색 성장	사회 복지과 취약 계층 권익 증진	자원 봉사 및 기부 나눔 문화 확산	자원 봉사 및 기부 나눔 문화 확산	국가 안보·재난 안전과 사회 통합

2) 안전행정부, 2014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수요조사서.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안전행정부, 2014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수요조사서 참고자료.

제 2 장 민간단체의 현황 및 개념

유형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	투명 사회 만들기	자원 봉사	자원 봉사	자원 봉사 NGO 활동 기반 확대	자원 봉사	자원 봉사 NGO 활동 기반 확대	사회 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 운동	녹색 성장과 자원 절약·환경 보전	국가 안보 증진 및 안전 문화 정착	국가 안보 증진 및 사회 통합	건강한 사회와 선진 시민의식 함양
4	자원 봉사	안전 문화·재해 재난	안전 문화·재해 재난 극복	안전 문화·재해 재난 극복	안전 문화·재해 재난 극복	안전 문화·재해 재난 극복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운동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 사회 구축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 사회 구축	재해·재난 극복 및 안전 문화 정착	녹색 성장과 자원(에너지) 절약
5	안전 문화·재해 재난	인권 신장·소외 계층 보호	소외 계층 인권 신장	소외 계층 인권 신장	소외 계층 인권 신장	소외 계층 인권 신장	관계 법률에 의해 권장 또는 허용하는 사업	자원 봉사·기부 문화 활성화	저탄소 녹색 성장 및 환경 보전	건강한 사회 및 성숙한 시민 사회 조성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인권 보호·권익 신장	자원 절약·환경 보전	자원 절약·환경 보전	자원 절약·환경 보전	자원 절약·환경 보전	자원 절약·환경 보전		안전 문화·재해 재난 극복 살리기	국제 교류 협력	저탄소 녹색 성장 및 자원(에너지) 절약	
7	자원 절약·환경 보전	NGO 기반 구축·시민 참여 확대	NGO 기반 구축·시민 참여 확대	국제 교류 협력	국제 교류 협력	국제 교류 협력		국제 교류 협력		국제 교류 협력	

유형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	NGO 기반 구축· 시민 참여 확대	국제 교류 협력	국제 교류 협력		NGO 기반 구축						

지난 10년간의 공익사업의 대표적 유형을 보자면, 자원봉사(10회), 안전문화·재해재난(9회), 자원절약·환경보전(9회), 국제교류협력(8회) 등이다. 2009년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유형 구분이 5개로 감소하면서 100대 국정과제나 4대강 살리기 운동과 같은 국가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위 표에서 보자면 공익사업의 유형이 일정한 기간, 예를 들면 5년 단위(2004-2008, 2009-2013)로 바뀌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공익사업의 유형을 매년 설정하기 보다는 4년 내지 5년의 기간 동안 지원하는 공익사업 유형을 정해두는 것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서울특별시의 공익사업 유형

서울특별시특별시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기획사업과 단체 제안 사업으로 설정하고, 지원사업의 분야를 4개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⁴⁾ 이러한 유형설정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단체 제안사업 유형 중에 ‘市 지정분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유형을 지정사업유형과 단체제안사업 유형으로 구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즉, 공익사업의 정책보완성과 상승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정사업유형을 활

4) 서울특별시시장,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347호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참조.

제 2 장 민간단체의 현황 및 개념

용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단체제안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생각된다.

<표 2> 서울특별시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5)

□ 기획사업

지원사업 분야	지원사업 내용
NPO 역량강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O 교육사업 - NPO 활동가 교육 및 간사학교 운영 등 ◦ NPO 교류사업 - NPO 활동가 교류 및 활동상황 홍보 등 ◦ NPO 정보제공사업 - NPO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등
정책연구 및 정책제안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민간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 해당단체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제안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 단체 제안사업

지원사업 분야	지원사업 내용
市 지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주변 시설물 안전점검 (어린이놀이터·공원 점검, 소공원 관리 등) ◦ 주5일 수업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 개발 제공 ◦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불편 개선사업 ◦ 노숙인 인식개선 사업 ◦ 민생침해사범(대부업, 다단계판매업, 전자상거래 등) 예방교육, 모니터링 활동 ◦ 「천만상상오아시스」(http://oasis.seoul.go.kr) 시민 아이디어 실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제안 아이디어를 단체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안 ※ 성과 우수사업(단체)은 2013년 계속 지원 검토

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347호 참조.

지원사업 분야	지원사업 내용
자유제안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 자유제안 사업 ※ 문화, 복지, 환경, 교통, 안전 등 시정 각 분야

공익사업의 유형결정에 있어서는 시행령에서의 공익사업 유형에 관한 기준을 공익사업 인정기준으로서 소극기준으로 설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취하고, 공익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정책이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상황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유형을 자유로이 설정하고 구체적 지원사업 선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2) 보조금 지원 주체 및 선정

1) 보조금 지원 주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조금의 지원주체이다(법 제6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기관과 보조금 지원 주체를 동일하게 한 것이지만, 아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경우에만 등록단체가 1,404개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319개보다 많고, 시·도의 전체 등록단체가 9,570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주체를 현행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확대하여 보다 시민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행정주체가 지원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에 밀착한 시민공동체로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보충성의 원칙’⁶⁾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보충성의 원칙이 국가나 하위의 행정단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정책실행 담당자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점에 대해, 장경원, EU행정법의 작동원리로서의 보충성의 원칙, 행정법연구 제17호(2007.5),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31면 참조.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보충성의 원칙에 관하여는 한귀현, 지방자치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3권제3호(2012.8), 한국비교공법학회, 245-274면 참조.

2) 보조금의 선정주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공익사업 유형 내에서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하고(동법 제7조제2항),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어지게 되며,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동법 제7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동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또한,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행 지원이 지원사업의 일회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한 사업에 대한 다년간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를 보다 장기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사업의 선정, 실행, 평가, 환류로 이루어지는 사이클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1)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2조). 평가의 주체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지만 안전행정부의 경우에는 외부용역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⁷⁾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단’ (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⁸⁾

안전행정부에서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사업별 점수(100점 만점 기준)를 산정한 우수, 보통, 부진(미흡) 등 3개 등급으로 선정하여 분류하며, 차기년도 사업 선정시 우수사업의 단체에는 가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의 단체에는 감점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⁹⁾

서울시의 경우에도 평가단으로 하여금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결과는 탁월, 양호, 보통, 미흡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차기년도 지원사업 선정을 할 때에는 탁월단체에 대해서는 5점 가점, 미흡(부진) 단체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¹⁰⁾

7) 안전행정부,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2013.5, 2면 참조. 성과평가는 외부용역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0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한국사회문화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2011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한국정책과학학회가 수행하였다. 2010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2011.03, (사)한국사회문화연구원; 행정안전부, 201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사)한국정책과학학회, 2012.03, 참조.

8)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64호) 제11조. 서울특별시, 2013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2013.3.26, 1면, 10면 참조.

9) 안전행정부,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11면 참조.

10) 서울특별시, 2013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2)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단에 의한 평가

평가단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민간단체 실무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평가단은 민간단체에게 현장점검 또는 중간평가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조사하고, 단체에 대한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워크숍 또는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¹¹⁾ 평가단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제출 및 사업정산 보고 후 종합평가를 완료하는데, 종합평가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와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평가기준에는 자부담 이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평가와는 달리 서울시에서는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제도적으로 이에 관한 정비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현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12년말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는 10,889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등록단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1,319, 지방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9,570로서 지방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전체 88%를 차지하고 있다.

2013.3.26, 10면 참조;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결과 공개, <http://opengov.seoul.go.kr/public/77405> 참조.

11) 서울특별시, 2013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6면 참조.

중앙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1,319중에서 법인과 비법인 단체는 각각 774개, 545개로 비법인 단체의 비율이 전체 41%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9,570중에서 법인과 비법인 단체는 각각 1,703개, 7867개로 비법인단체의 비율이 82%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비영리활동이 전국각지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 내지 관리에 관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수¹²⁾

		2008	2009	2010	2011	2012
등록누계(개)		8,175	9,003	9,487	10,239	10,889
구 분	중앙정부(개)	845	981	1,077	1,219	1,319
	지방정부(개)	7,330	8,022	8,410	9,020	9,570
증가단체수 (신규단체)		934	828	484	752	680
증감비(%)		13.0	10.0	5.4	8.0	-

12) 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856

<그림 1>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수¹³⁾



<그림 2> 비영리 민간단체[중앙·지방정부]등록 추이¹⁴⁾



13) 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856

14) 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856

<표 4> 중앙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¹⁵⁾

연 번	기 관	계	단체유형		비 고
			사 단 ¹⁶⁾	비법인	비법인 비율(%)
	총 계	1,319	774	545	41
1	방송통신위원회	11	5	6	55
2	기획재정부	7	4	3	43
3	국가보훈처	9	4	5	55
4	공정거래위원회	7	5	2	29
5	금융위원회	4	2	2	50
6	교육과학기술부	50	21	29	58
7	통일부	119	77	42	35
8	외교통상부	157	113	44	28
9	법무부	7	3	4	57
10	국방부	26	9	17	65
11	행정안전부	206	118	88	43
12	문화체육관광부	125	61	64	51
13	농림수산식품부	38	29	9	24
14	지식경제부	9	8	1	11
15	보건복지부	146	78	68	47
16	환경부	153	65	88	58
17	고용노동부	43	33	10	23

15) 안전행정부,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통권 제15호), 2013.6, 380-381면.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856&bbs=1NDX_001&clas_div=C&rootKey=6.48.0

16) 정부 통계표에는 사단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 중 30개의 재단을 포함하고 있음.

제 2 장 민간단체의 현황 및 개념

연 번	기 관	계	단체유형		비 고 비법인 비율(%)
			사 단 ¹⁶⁾	비법인	
18	여성가족부	87	56	31	36
19	국토해양부	30	18	12	40
20	통계청	1	1	0	0
21	경찰청	7	7	0	0
22	소방방재청	12	7	5	42
23	문화재청	6	0	6	100
24	농촌진흥청	6	6	0	0
25	산림청	12	9	3	25
26	중소기업청	2	2	0	0
27	특허청	23	23	0	0
28	식품의약품안전청	2	1	1	50
29	해양경찰청	10	8	2	20
30	국가인권위원회	1	1	0	0
3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	0	3	100

중앙부처별로 보자면 통일부(6개) 한국통일진흥원, 평화재단,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포럼국민의 힘, 섬김, 새누리 좋은 사람들, 문화체육관광부(2개) 한국 YMCA 전국연맹,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농림수산식품부(1개) 일가재단, 보건복지부(2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소아암재단, 환경부(1개) (재)녹색미래, 고용노동부(2개)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여성가족부(3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1세기공동체개발원, 농촌·청소년 미래재단, 식품의약품안전청(1개)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특허청(2개)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외교통상부(10개) 한민족복지재단, 광성, 국제개발원, 밝은 사회 인터내셔널, 플랜한국위원회, 심전국제교류재단, 한베재단, 동방해오름교류재단, 아시아문화교류재단, 한국아랍소사이어티가 있다. 이 재단 중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같이 발명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연구기관도 포함되어 있어 통계의 신뢰가 높지 못하다.

<표 5> 지방자치단체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¹⁷⁾

연 번	기 관	계	단체유형		비 고
			사 단	비법인	비법인 비율(%)
	총 계	9,570	1,703	7,867	82
1	서 울	1,404	298	1,106	79
2	부 산	617	116	501	81
3	대 구	365	78	287	78
4	인 천	522	91	431	83
5	광 주	369	124	245	66
6	대 전	424	92	332	78
7	울 산	263	52	211	80
8	세 종	9	1	8	89
9	경 기	1,727	192	1,535	89
10	강 원	259	32	227	88
11	충 북	365	54	311	85
12	충 남	351	59	292	83
13	전 북	857	164	693	80
14	전 남	497	67	430	87
15	경 북	649	108	541	83
16	경 남	596	113	483	81
17	제 주	296	62	234	79

17) 안전행정부,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통권 제15호), 2013. 6. 382면.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856&bbs=INDX_001&clas_div=C&rootKey=6.48.0 참조.

제 2 절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현황

1. 비영리법인의 개념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말한다(민법 제32조). 민법은 제3장(제31조-제97조)에서 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들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

우리 민법상 법인개념은 의용민법이 설정한 ‘공익법인’ 개념을 ‘비영리법인’ 개념으로 바꾸어 정의하였다(민법 제32조). 일본민법 제34조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에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공익·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우리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일본 민법의 공익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바꾸어 규정하였던 것이다.

<표 6> 현행법상 영리성·공익성 여부 등에 따른 단체의 분류

법적 성격		유 형		법적 근거	비 고
비 영 리	법 인	공 익	특수법인	각 개별법	개별법에 의한 감독

제 2 절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현황

법적 성격			유 형	법적 근거	비 고
			사회복지법인 ¹⁸⁾	사회복지사업법	개별법에 의한 감독
			학교법인 ¹⁹⁾	사립학교법	개별법에 의한 감독
			의료법인 ²⁰⁾	의료법	개별법에 의한 감독
	비공익	비영리법인	민 법	학술, 종교, 자선, 기 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 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	
		협동조합 등	각종 협동조합 관련법률	잉여금 배당	
비법인	공 익	비영리민간단체	비 영 리 민 간 단 체 지원법	영리가 아닌 공익활 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비공익	법인격없는 단체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공익성 부적합	
영 리 법 인	공 익	공기업등	각종 공기업설 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 률 등 ²¹⁾	비영리성, 비정부성에 부적합	

18) 2010년말 사회복지법인 1,718개(영유아 보육사업 목적 법인 제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w.go.kr/front_new/jb/sjb06011s.jsp

19) 2013.4.1 현재 학교법인은 유치원 19, 초등학교 7, 중학교 125, 고등학교 683개, 전문대학 208개, 대학 193개, 각종학교 3개, 기타학교 20개 총 1,258개이며, 학교법인의 수는 법인 관할 학교수가 아닌 법인 수임(동일 법인에 초, 중,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학제인 고등학교로 산출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3년 교육통계연보 참조. <http://cesi.kedi.re.kr/> 참조.

20) 2012년말 전국 의료법인의 수는 1,117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건강보험통계연보, 41면 참조.

21) 2013년 공공기관 지정현황(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공

제 2 장 민간단체의 현황 및 개념

법적 성격		유 형	법적 근거	비 고
	비공익	회사(주식, 유한, 합자, 합명 등)	상 법	비영리성에 부적합

<표 7> 한·일 민법의 법인설립에 관한 규정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u>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u> 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일본민법 제34조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에 <u>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u>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u>법인</u> 으로 할 수 있다

(2) 비영리법인에서 공익법인으로

따라서 우리 민법의 법인개념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어,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비공익법인도 포섭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써 비영리법인을 바로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반면에, 일본민법은 공익·비영리법인을 규정한 결과, ‘비공익·비영리법인’은 민법을 근거로 설립할 수 없게 된다.²²⁾ 또한 일본 민법이 공익·비영리법인을 정하고는 있

기관의 변동현황, 2013.4.11)에 따르면 시장형공기업 14개(예,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준시장형공기업 16개(예,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개(예,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영화진흥위원회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개(예,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기타공공기관 178개(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재외동포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295개이다.

22) 일본의 경우, 2001년 6월 15일 법률 제49호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비공익)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비영리) 단체를 준칙주의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中間法人法」을 제정한 바 있으나, 2008년 12월 1일에 시행된 公益法人制度改革関連三法 중 하나인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關す

지만, 공익법인에 대해 현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공익법인의 감독,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법은 공익법인에 관한 규율밀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이 제정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공익법인법」 제2조에서는 이를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된다. 문제는 민법의 비영리법인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공익법인이 되는지, 말하자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민법과 공익법인법 사이를 연결하여 주는 고리가 관련 법률에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민법에서 공익법인에 관한 규정이 현시대적 공익법인에 요청되는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익법인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우리의 공익법인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라고 하는 행정 행위를 통해 공익성의 인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와 공익성의 인정

우리 민법은 모든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민법 제32조), 일단, 개념상 비영리이면서 비공익법인의 경우, 예를 들면 구성원 내부의 친목, 사교, 상부상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る法律及び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로 「中間法人法」을 폐지하고, 기존의 중간법인은 일반사단법인에 흡수되었다. 全国公益法人協議会編, 公益法人制度改革3法, 全国公益法人協会, 2006 참조.

대해서까지 허가제로 이를 사전규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 논의의 전개를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에서 허가의 법적 성질을 잠시 살피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강학상 ‘허가’란 공익보호를 위해 일정한 행위를 사전에 방의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금지하여 두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금지를 개별적으로 해제하여 줌으로써 국민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유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강학상 ‘인가’란 본래는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의무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기본행위를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이자 완성행위이다. 따라서 인가가 없으면, 완전한 법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인가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될 수 있다(사업양도의 인가, 비영리법인설립, 공공조합설립의 인가 등).

민법 제32조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해서는 강학상의 인가로 보는 견해²³⁾와 강학상의 특허로 보는 견해²⁴⁾로 갈리고 있다.

먼저, 강학상 특허로 보는 견해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設權的)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한 대판 2009.9.24, 2008다60568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을 근거로 하고 있다.

23) 김동희, 행정법 I [제17판], 박영사, 2011, 290면.

24) 법인설립의 허가를 설권행위로서의 특허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중권, 민법개정시안상 법인설립 등에 대한 국가개입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11.6.20. 참조.

허가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견해의 대립은 비영리법인이 가지는 비영리성과 공익성이라고 하는 이중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영리법인을 비영리성을 가진 개인들의 자유로운 결사로 이해할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기본적으로 기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의 개정시안에 있어서 ‘허가’를 ‘인가’로 수정한 것은 재량에 의한 설립허가를 준칙주의로 수정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²⁵⁾ 다만, 허가를 인가로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련법령에서 재량을 축소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인가에 대한 법의 기속 정도는 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법의 관련규정은 허가의 기준에 어떤 규율도 하고 있을 않을 뿐더러, 「공익법인법」은 제4조에서 설립허가 기준을 정하고는 있지만, 그 규율밀도가 상당히 낮아서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성을 갖게 되는 조직이라면, 결국 공익성의 부여라고 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재량이 인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비영리법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분리하여 2단계의 법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로서 비영리성에 대해서는 준칙주의를 관철하고, 두 번째 단계로서 공익성을 인정하는 별도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비공익법인)에 관해서는 준칙주의를 도입하여 자유로운 결사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성의 인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5) 김대정, 법인법개정안 해설, 법인·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10.12.21, 11면 참조.

2. 비영리법인의 등록현황

비영리법인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데, 그 정확한 수가 일정한 시기에 동일하게 고시되고 있지 않아 전모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법인세와 관련하여 정리한 공익법인에 관한 현황을 참고하기로 한다.

아래 표에서는 2011년도 말 현재 전체 공익법인의 전체 수가 29,170 개임을 알 수 있다.

<표 8> 공익법인 가동 법인수²⁶⁾

구분 Classification	구분 Classification	합 계 Total (1) 구분 Classification	종교 보급 Religion (2)	사회 복지 Social Welfare (3)	교육 사업 Edu- cation (4)	학술· 장학 Academy (5)	예술 문화 Art & Culture (6)	의료 목적 Medical Care (7)	기 타 Others (8)
2007년	2007 Total	27,793	17,591	2,692	1,751	2,937	561	495	1,766
2008년	2008 Total	27,811	17,586	2,693	1,745	2,960	572	503	1,752
2009년	2009 Total	28,905	17,958	2,830	1,749	3,163	673	610	1,922
2010년	2010 Total	29,132	17,863	2,895	1,735	3,134	773	671	2,061
2011년	2011 Total	29,170	17,753	3,028	1,681	3,229	658	700	2,121

26)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제 2 절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현황

구분 Classification	구분 Classification	합 계 Total (1) 구분 Classification	종교 보급 Religion (2)	사회 복지 Social Welfare (3)	교육 사업 Edu- cation (4)	학술· 장학 Academy (5)	예술 문화 Art & Culture (6)	의료 목적 Medical Care (7)	기 타 Others (8)
지역별	by Region	29,170	17,753	3,028	1,681	3,229	658	700	2,121
서울	Seoul	6,569	3,394	441	318	1,204	273	81	858
인천	Incheon	1,137	882	62	51	62	10	27	43
경기	Gyeonggi	4,916	3,665	270	263	289	70	111	248
강원	Gangwon	988	490	161	53	159	28	33	64
대전	Daejeon	977	613	97	48	89	16	30	84
충북	Chungb uk	1,373	945	164	55	88	18	35	68
충남	Chungn am	1,259	709	222	76	126	22	40	64
광주	Gwangju	1,056	537	190	81	157	18	10	63
전북	Jeonbuk	1,724	1,065	217	97	162	36	45	102
전남	Jeonnam	1,380	807	214	78	133	34	31	83
대구	Daegu	1,410	871	179	118	120	24	31	67
경북	Gyeong buk	2,122	1,452	171	154	147	30	74	94
부산	Busan	1,750	918	255	130	235	26	70	116
울산	Ulsan	310	181	41	23	27	2	12	24
경남	Gyeong nam	1,795	1,050	231	113	181	47	59	114
제주	Jeju	404	174	113	23	50	4	11	29

[A] 2011년도말 현재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을 기준으로 작성

[A] Based on corporations registered as public-service corporation as of the end of
the year 2011

3. 공익법인의 의의

(1) 공익법인의 의의 및 목적사업

공익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민법의 보완적 법률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동법 제2조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익법인의 정의를 좀 더 상세히 하고 있는데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다. 학자금·장학금에 관한 사업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장학 목적을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에 관한 사업이란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을 말한다. 학술에 관한 사업이란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선에 관한 사업이란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위 사업의 유공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한다.

(2)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점

민법에서의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며, 공익법인법에서의

공익법인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고 있다. 두 조문을 단순 비교하자면, 민법의 비영리법인에서 공익법인법의 공익법인을 공제하면 ‘종교, 기예, 사교’를 비영리로 하는 법인이 남을 것이다. 또는 비영리법인에는 없고 공익법인에는 있는 목적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이다.

판례는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공익법인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²⁷⁾

판례는 민법과 공익법인법의 관계를 별개의 법적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공익법인법과 동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공익법인의 종류를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해석은 엄격한 문언해석을 취할 경우에 도출될 수 있는 해석이라고는 생각되지만, 공익법인법 제1조의 목적에서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라 정하고 있는 점을 목적론적으로 해석하고, 공익법인법의 관련 내용과 민법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해석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경우에는 관련 법체계를 재정비하여 보다 명확하게 법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론적 해결이 도모되어야 한다. 우선은 공익법인법에서 인정하는 공익목적사업의 종류를 현재와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할 것이 아니라, 보다 분명

27)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43580판결;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도4002 판결 등 참조.

하게 비영리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중에서 일정한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는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익법인의 인정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의 객관적 인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공익인정을 독임제의 주무관청이 아니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 등에게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그 의견에 따라 행정청이 인정하는 제도설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익단체 인정기준은 모든 종류의 공익단체의 공익성 심사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공익성인정기준은 모든 종류의 다양한 공익사업의 심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성을 갖추어야 하며, 알기 쉽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²⁸⁾

사회가 다양화되고 각 분야에서의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단체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기대는 한층 강해지고 있으며, 그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요청을 전체 법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28) 이중기, 공익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2009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56면 참조.

제 3 장 일본의 공익법인제도 개혁과 세제

제 1 절 일본의 공익법인제도 개혁

1. 공익법인제도 개혁의 의의

(1) 일본의 공익법인제도개혁에서의 주무관청제도의 개정과 준칙주의 채용

1) 주무관청제에 의한 허가주의의 폐해

현행 일본 민법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은 주무관청이 하게 되어 있다.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내각부와 10개의 중앙행정기관을 가리키고, 이들이 설립허가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를 하는 제도를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제도’라고 한다.

종래 주무관청제도는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이점을 부여하여 왔다. 주무관청(내지는 소관관청)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보조금 등의 재원이 확보되고, 공익사업도 주무관청으로부터의 위탁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수동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력없이도 재원이 확보된다는 것은 서비스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주무관청제에 의해 행동이 제한되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설립시점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성의 판단에 관한 자문을 받지 않으면 통상의 민간이 새로이 설립허가를 취득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주무관청의 재량이 컸기 때문에, 주무관청 측이 필요로 하는 공익법인(=관제법인)의 설립이 용이하였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또 공익법인은 일단 설립된 이후에는 소관관청에 의한 감독이 매년 계산서류의 제출정도로 완화될 수 있었으며, 법인활동의 공익적합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장기에 걸쳐 주무관청의 재량에 의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왔다.

공익법인은 세법상의 수익사업 이외에는 비과세, 수익사업이더라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전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과대한 내부유보를 축적하는 경우도 있었고, 불투명한 자금의 은닉처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 점에 관해서는 최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기준”의 설정이나 출입검사 실시 등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주무관청제를 중핵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기본적인 구조가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민유착이나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가 불식되지는 못하고 있다.

게다가, 주무관청의 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오히려 관청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폐해도 발생하고 있다.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수익자를 위한 활동보다도 관청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면 공익활동으로부터 수익을 받아야 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은 공익법인의 존재의의를 위협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간편한 준칙주의로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공익법인제도개혁에서는 주무관청제가 가진 폐해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사항이었다. 법인격의 유무를 일정한 우대 조치와 분리하고, 공익성의 유무에 관련없는 새로운 비영리법인제도를 창설하는 점, 이 비영리법인제도는 등기에 의해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점(=준칙주의)이 중요하다.

준칙주의에 관해서는 이미 비영리법인의 일종인 중간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도 채용되고 있었다. 준칙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인증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는 소관관청의 인증을 요한다는 점에서 준칙주의보다는 허가주의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은 이 인증주의를 채용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인증이 서면 심사로 이루어지고 소관관청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은 여지가 협소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인증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허가주의와는 장애물의 높이가 현저히 다르고, 행정의 재량의 여지도 대단히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익성의 판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술하지만, 설립이 등기만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시점에서의 주무관청의 허·인가권한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공익법인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공익법인 제도개혁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 등

일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되어야 하고, 그 법인의 설립, 조직,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다.²⁹⁾ 일반법인이 공익법인이 되려면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 2006년 6월 2일 법률 제49호, 이하 “공익법인인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의하여 별표 각호에서 정한 ‘공익목적사업’을 하는 것으로 행정청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동법 제4조). 공익목적사업을 하는 일반법인이 공

29) 일본 민법 제33조(법인의 성립 등) ① 법인은 이 법률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영리사업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법인의 설립,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는 이 법률과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일반법인은 공익인정기준을 만족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행정청(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에 공익성에 대한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동법 제4조, 제7조). 둘째, 신청을 받은 관련 행정청은 허가등의 행정기관이나 경찰청장, 국세청장에게 일정한 사유³⁰⁾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동법 제8조), 공익성 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인정등 위원회’ 또는 도도부현에 설치한 합의제기관에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셋째, ‘공익인정등 위원회’ 및 도도부현에 설치된 합의제기관은 공익인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자문에 대해 법인의 공익성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하고, 관련행정청은 이에 따라 공익성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동법 제43조).

일본의 공익법인 개혁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공익인정등 위원회로 하여금 공익인정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하도록 한 점이다. 즉 행정청이 재량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던 허가주의 원칙을 폐지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익인정등 위원회와 합의제기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공익성인정을 하도록 한 점이다. 일본이 허가주의를 폐지한 점은 발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익인정등위원회는 행정청(내각총리대신 등)의 자문에 응하여 답신을 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공익성인정이라는 행정처분은 여전히 행정청이 담당한다.³¹⁾

제도개혁의 목적은 민간비영리부문을 일본의 사회경제 시스템 속에서 그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행정위탁형 공익법인을 포함하여 민법에서 정해지고 있던 공익법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30)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지,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리적 기초 및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투기적 거래 등 공익법인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함에 있어 부적합하거나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처분에 위반하고 있는지 등

31) 이중기, 전계 보고서, 31-36면 참조.

즉, 기부금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포함하여, 「민간이 담당하는 공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의 구축을 지향하는 점에 있다. 그 전제로서 법인세제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 공익법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2006년 3월에 「공익법인제도개혁 관련 3법안」이 각의결정되고, 동년 5월에 제164회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성립되었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그 중심은 법인격취득과 공익인정을 분리하여, 준칙주의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등기로 설립, 주무관청제 폐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에 의한 공익인정, 공익인정요건의 실정화, 중간법인의 통합, 기존의 공익법인의 이행·해산 등이다.

2. 경 위

1) 1896년(명치 29년)부터 2008년(평성 20년) 11월 30일

두 종류 :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총칭하여 공익법인

2) 2008년(평성 20년) 12월 1일부터 2013년(평성 25년) 11월 30일

①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이는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으로부터 공익인정된 것 또는 특례민법법인으로부터 이행이 인정된 것

②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

새로이 설립된 것 및 잠정 5년직전까지의 사단법인·재단법인으로부터 일단 「특례민법법인」이 되어 이행된 것. 잠정 5년직전의 사업년도에서의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공익목적재산액이라 한다)을 공익의 사업을 위해 전부 사용하는 계획(공익목적지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신청하고 실시하여 인가를 받아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으로 이행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공익법인시대의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을 보유한 채로 세제나 법제가 다른 일반사단법인이나 일반재단법인으로 이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이행하는 것을 관련법의 조문에서 「통상의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으로의 이행」이라 한다.

③ 특례사단법인 및 특례재단법인

총칭하여 특례민법법인이라 한다. 잠정 5년간의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법인법제에 대해서는 일부의 사항에 대해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다. 세제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다.

1896년의 공익법인제도부터 공익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이었던 것은 2008년 12월 1일의 신공익법인제도시행으로부터 이행기간말일인 2013년 11월 30일까지의 5년간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를 특례사단법인, 특례재단법인이라 하고, 총칭하여 특례민법법인이라 한다.

특례민법법인은 2013년 11월 30일까지의 이행기간 내에 그 정관을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법에 합치하도록 변경결의한 후에(이행등기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가능), 공익법인인정법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공익법인으로 이행하는 인정을 받을지, 공익인정을 받지 않는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으로 이행하는 인가를 받고, 이행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종료와 동시에 자동해산이 된다. 다만, 2013년 11월 30일까지의 신청을 마치고, 그 후 인정 또는 인가를 받으면 이행할 수 있다.

공익법인제도개혁 3법 시행일인 2008년 12월 1일 시점에서 「특례민법법인」으로 바뀌고, 이들 중 중앙행정기관 소관이 6,625법인, 도도부

현 소관이 17,818법인으로 총 24,317법인이 있었다. 또 중앙행정기관 소관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 출신 이사가 있는 법인수는 2,933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 출신 이사는 6,709명이었다.

3) 2013년 12월 1일 이후(네 종류)

-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

공익법인제도개혁 3법 시행으로부터 잠정 5년안에 새로이 이런 법인이 된 것, 또는 잠정 5년간 경과후는 이들 네 종류의 법인으로 이행을 마친 것. 또는 이 단계에서는 잠정 5년간 이행에 대한 인가나 인정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얻지 못하고 잠정 5년간의 최종일 11월 30일에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3. 공익법인 감독

(1) 공익법인 감독의 기본적 방침³²⁾

공익법인제도개혁에 따라 ① 감독에 대해서도 주무관청에 따른 재량적인 것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요건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된 것, ② 법률에 따라 법인의 거버넌스(내부통치) 및 정보개시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되었고, ③ 부적절한 사안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도 있고, ④ 법인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감독기관(행정청인 내각총리대신 및 법률에서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익인정등위원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신공익법인(신제도의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음)의 감독에 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2) 内閣府、監督の基本的考え方、平成20年11月21日

- (1)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요건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법인 자치를 대전제로 하면서 민간에 의한 공익의 증진을 위한 신공익법인이 신제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점을 가진다.
- (3) 제도로의 신뢰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있는 신공익법인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
- (4) 공익인정신청 등의 심사, 정기제출서류 등의 확인, 출입검사 등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법인의 실태과악에 노력한다.

또한 이행법인(공익목적지출계획을 실시중인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음)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지출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하고, 이행법인이 공익목적에 위한 지출(정비법 제119조제2항제1호 각호의 지출을 말한다.)을 하는 한에서는 공통의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공익법인의 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독한다.

(2) 공익법인 감독의 구체적 조치 범위

“감독”은 공익인정(신규, 이행), 이행인가의 등기종료 후, 행정청 및 법률에서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합의제의 기관이 신공익법인의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에서, 또 이행법인의 공익목적지출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인정법에서는 제2장제3절에 “공익법인의 감독”이 규정되어 있고, 보고징수, 출입검사, 권고, 명령, 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다른 절에 규정되어 있는 변경의

인정, 정기적인 사업보고 등도 신공익법인의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들 전체를 감독의 구체적 조치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행법인에 대해서는 정비법 제123조제2항에 감독의 근거규정이 있으며, 더욱이 공익목적지출계획의 변경인가, 공익목적지출계획실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보고징수, 출입검사, 권고, 명령, 인가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런 것을 감독의 구체적 조치로서 이해할 수 있다.

4. 공익인정 등에 관한 심의

(1) 심의의 기본방침³³⁾

「내외의 사회경제정세 변화에 따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실시가 공익의 증진을 위해 중요해진 점을 생각하여」, 당 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공익을 증진하고 활력 있는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생각을 전원이 공유하고, 의식하여 이를 지향한다. 심의에 있어서는 아래의 사항에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 ① 각 법인의 활동실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각 법인의 창의나 자주성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한다.
- ② 법률준수를 전제로 하면서, 항시 개혁의 취지로 돌아가서 유연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 ③ 심의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임한다.

33) 審議の基本方針、2007년 4월 13일, 公益認定等委員会

(2) 공익인정심의회 중립성·공정성의 확보³⁴⁾

1. 위원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판단의 중립성·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심의 및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상기의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 신고한다. 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피한 취지를 의사록에 기록함과 동시에 답신에 부기한다.

(3) 법인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인정기준

신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로이 만들어진 엄격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공익법인인정법 제5조).

대별하자면, 첫째 공익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공익성”의 기준, 둘째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능력·체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버넌스”의 기준이 있다.

1) 공익성 - 공익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①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

공익목적사업이란 학술, 기예, 자선 그 밖에 공익에 관한 공익법인 인정법 별표 각호에 열거하는 종류의 사업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공익목적사업비율이 50%이상일 것이 필요하다(제1호, 제8호).

공서양속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공익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관계없지만, 이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의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 필요하다(제5호, 제7호)

34) 公益認定等に係る審議の中立性・公正性の確保について、2007年10月19日、公益認定等委員会決定第2号

② 특정한 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특별한 이익」이란 법인의 사업내용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경우에 사회통념에서 보아 합리성을 결여한 이익이나 우대를 말한다. 신공익법인은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원이나 이사 등의 법인의 관계자, 주식회사 그 밖에 영리사업을 하는 자 등에게 「특별한 이익」을 부여해서는 안된다(제3호, 제4호).

③ 수지균형이 예상될 것

신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에 관계되는 수입액이 그 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비용을 충당할 액을 넘어서는 안된다(제6호).

④ 일정 이상으로 재산을 쌓아두지 않을 것(유휴재산규제)

유휴재산액이란 법인의 순자산에 계상된 액 중에서, 구체적인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재산액이다. 이 유휴재산액은 1년분의 공익목적사업비상당액을 넘어서는 안된다(제9호).

⑤ 그 밖(이사 등의 보수에 대한 규제, 다른 단체의 지배에 대한 규제)

신공익법인의 이사, 감사 등에 대한 보수 등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고액이 되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제13호). 또 실패로서 영리활동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단체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주식 등의 재산을 보유해서는 안된다(제15호).

2) 거버넌스 -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능력·체제

① 경리적 기초·기술적 능력

공익법인이 안정적이며 계속적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경리적 기초」 및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제2호). 예를 들면, 업무를 다른 법인에 완전히 넘겨서는 안된다.

②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사·감사가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특정한 이익을 공통으로 하는 이어나 감사가 다수를 점하고 있음으로써,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하는 법인본래의 목적에 반한 업무운영이 이루어질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 및 감사 중, 친족 등,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합계수는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제10호, 제11호).

③ 공익목적사업재산의 관리에 대해 정관에서 정하고 있을 것

신공익법인의 재산 중, 공익목적에 위해 소비되어야 하는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재산」이라 한다. 특히,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결한 특정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제16호).

공익을 위해 모은 재산은 최후까지 공익적으로 소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① 공익인정의 취소를 받은 때 등은 공익목적사업재산의 잔액을(제17호), ②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을(제18호), 각각 공익목적단체에 증여하는 자, 정관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④ 그 밖에 회계감사인설치, 사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조건 등(제12호, 제14호)

3) 소극적 사유

공익법인인정법 제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익인정을 받을 수 없다.

- ① 이사, 감사, 평의원 중 일정한 요건(공익인정이 취소된 공익법인의 이사로서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② 공익인정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 ③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 ④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령상 필요한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이 집행중 또는 체납처분 종료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 ⑥ 폭력단원 등이 그 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제 2 절 일본의 공익법인에 관한 세제 개정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이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에 세제상 우대조치하고 있다. 또 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 스스로의 세제상의 우대조치도 설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목적사업에 관련된 활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활동을 촉진하면서 적정한 과세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공익법인 및 이에 대한 기부를 하는 개인 및 법인에 관한 소득과세에 관해, 소득세, 법인세 및 상속세 및 지방세의 과세에 대한 필요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공익법인인정법 제58조).

공익법인제도개혁에 따른 새로운 공익법인제도는 민간에 의한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2008년도의

세제개정에서는 민간이 수행하는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세제면의 조치가 강구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조치 중, 소득세에 관한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³⁵⁾

공익법인제도개혁에 대응한 세제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세제조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답신이 있었다.³⁶⁾

4. 공익법인세제

사회가 활력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문만이 아니라, 「민간이 담당하는 공익」의 중요성이 향후 더욱 증대될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그 담당자가 되는 공익법인에 관련되는 제도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해 12월부터 새로운 제도(이른바 공익법인관련3법)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세제면에서도 「민간이 담당하는 공익」을 지원하는 제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당 조사회에서는 2005년 6월에 기초문제소위원회·비영리법인과세 워킹그룹에서 「새로운 비영리법인에 관한 과세 및 기부금세제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정리하였고, 그곳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세제상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지만,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해 두자 한다.

첫째로, 새로이 창설되는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제3자 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담당하고, 공익목적사업재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근거하여, 공익목적사업의 수행 등이 요구되는 법인이며, 공익목적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취급 등에 관하여 공익목적사업의 실시를 지원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로, 새로이 창설되는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준칙주의에 따라 설립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이 때문에 일률적인 처리를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다른 법인 등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에도 유의하면서 실태에 따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35) 公益法人制度改革に対応した税制上の措置(所得税関係)、201頁이하 참조.

36) 政府税制調査会、「抜本的な税制改革に向けた基本的考え方(平成19年11月)」

셋째로, 민간이 담당하는 공익활동을 자금면에서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부
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 때문에 특정공익증진법인 중에서 공익사단법인·공익
재단법인을 위치지움으로써, 기부한 개인·법인이 기부금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인에 의한 현물의 기부에 배려하는 등 기부하기 좋은
환경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개인주민세의 기부금세제의 방향에 대해서도 전술한 방향성을 바탕으
로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로, 새로이 창설되는 법인이 조세회피에 남용되지 않도록, 현행 공익법
인 등에 관한 조세회피의 방지조치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로, 현행 사단법인·재단법인이 일반사단법인·재단법인으로 이행할
때에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계속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공공법인 등 비과세의 개정

(1) 개정전의 제도개요

소득세법 별표 제1 제1호에 열거하는 국내법인(이하 “공공법인 등”
이라 한다)이 지분을 받게 되는 이자배당 등(소득세법 제174조 각호에
열거하는 이자 등, 배당 등, 급부보전금, 이익, 차익 및 이익의 배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구소득세법 제11조제1항, 소득세법령 제50조의2). 또한 이자배당 등
중, 공사채 혹은 대부신탁, 투자신탁 혹은 특정목적신탁의 수익권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이하 “공사채 등”이라 한다)의 이자, 수익의 배분
또는 잉여금의 배당(이하 “공사채 이자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공공법인 등이 그 공사채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대
응하는 부분의 액으로서 일정한 계산으로 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 ① 대부신탁의 수익권
- ② 공사채투자신탁의 수익권
- ③ 공사채등운용투자신탁의 수익권
- ④ 사채적 수익권

소득세법 별표 제1 제1호에 열거하는 공공법인 등은 대별하자면, ① 지방공공단체, ② 전액정부출자로 정부에 대신하여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고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행정법인 등의 공공법인,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④ 민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다.

소득세법 별표 제1 제2호에 열거하는 외국법인(이하 “외국공익법인”이라 한다)이 지불받은 소득세법 제161조제1호의2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열거하는 국내원천소득(공사채이자 등에 있어서는 그 외국공익법인이 그 공사채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였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액으로서 일정한 계산을 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구 소득세법 제11조제2항).

「공익신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공익신탁 또는 「사채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가입자보호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소득(공사채이자등에 있어서는 그 공사채 등이 그 공익신탁 또는 가입자보호신탁의 신탁재산에 계속하여 속해 있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액으로서 일정한 계산을 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구 소득세법 제11조제3항).

공익신탁이란 「공익신탁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수탁자의 정함이 없는 신탁 중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또 가입자보호신탁이란 증권결제시스템(사채등대

체제도)에서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그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을 말한다. 이러한 신탁에 대해서는 그 신탁이 가진 공익성에 착안하여 공공법인 등의 비과세법인과 동등하게 신탁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로 되어 있다.

공사채 등의 이자 등에 대해서는 공공법인 등 또는 외국공익법인이 지불을 받는 경우 및 공익신탁 또는 가입자보호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경우의 비과세의 범위는 그 공공법인 등 혹은 외국공익법인이 그 공사채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던 기간 또는 그 공사채 등이 그 공익신탁 혹은 가입자보호신탁의 신탁재산에 계속하여 속해 있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는 이자지불시에 공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채 등에 관련한 공사채 이자 등의 전액을 비과세의 대상으로 한 경우, 공공법인 등에 이자지불 직전에 양도하는 개인은 그 양도까지의 사이에 발생하는 공사채 등에 관련되는 경과이자 상당부분에 대한 세액을 부담하지 않고, 그 전액이 비과세(조세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채 등의 양도 등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로 되어 있다)가 되어 버린다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구소득세법 제11조제1항,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2) 개정의 내용

- 1) 공익법인제도개혁에서 민간에 의한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구민법의 공익법인제도가 새로운 법인제도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법인제도에 있어서의 공익목적사업의 실시주체가 되는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은 이들 법인이 공익법인인정법에 근거한 공익인정제도 하에서 인정을 받은 법인이라면, 구민법 제34조 법인이 개정전의 공공법인 등으로서 보비과세제도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비과세제도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본 비과세제도의 대상으로서, 소득세법 별표 제1에 열거하는 공공법인 등의 범위에 추가되고, 그 지불을 받을 이자배당 등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게 되었다.(소득세법 별표1).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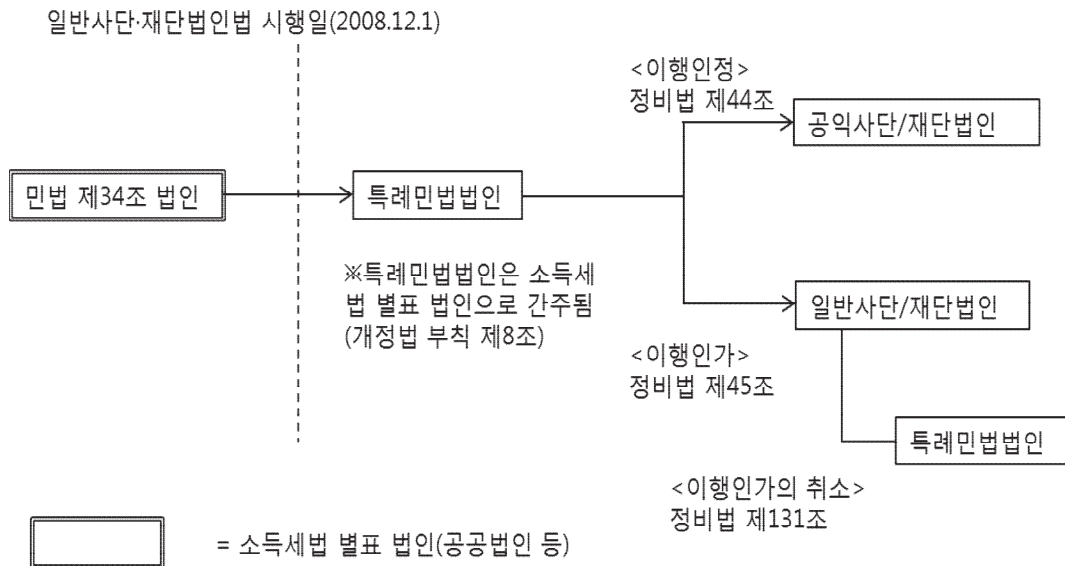
2) 공공법인 등으로서 개정전의 소득세법 별표 제1제1호에 열거되어 있던 구민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제도개혁에 따라 그 근거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에, 소득세법 별표 제1에서 필요한 정비가 이루어졌다(구 소득세법 별표 제1). 이 구민법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중, 이행인정 또는 이행인가를 받기 전의 이른바 특례민법법인에 대해서는 원활한 신제도로의 이행을 배려하기 위해 정비법에 있어서도 이행기간중에는 종래의 소관관청이 계속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종전의 제도와 같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제상도 개정전의 과세관계를 계속하는 경과조치가 강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특례민법법인(개정전의 소득세법 별표 제1제1호에 열거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서 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으로서 존속하는 것 중에 정비법 제106조제1항의 이해인정의 등기 또는 정비법 제121조제1항의 이행인가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행인가가 취소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는 개정후의 소득세법 별표 제1의 공공법인 등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법 그 밖의 소득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었다(개정 법 부칙 제8조). 이 결과 이행인정 또는 이행인가를 받기 전의 특례민법법인이

37) 법인세법 별표2(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추가된 비영리형 법인에 해당하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 실무,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과는 법인세법상의 차이 등을 바탕으로 그 지불을 받는 이자배당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소득세법 별표 제1의 공공법인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불받는 이자배당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되었다.

- 3) 개정전의 소득세법 별표 제1제1호에 열거되고 있던 법인인 국가 공무원의 단체 및 지방공무원의 단체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제도개혁과 함께, 정비법에서 그 법인격 부여의 근거법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직원단체 등에 대한 법인격의 부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동법의 직원단체 등에 포함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소득세법 별표 제1에서 필요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또한 법인인 동법의 직원단체 등은 소득세법 별표 제1의 공공법인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정후의 이들 단체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처리에 대해서는 개정전과 같게 된다.

<그림 3> 공익법인 등에 관련된 소득세법별표법인(공익법인 등)의 적용관계



2. 기부금공제의 개정

(1) 개정전 제도의 개요

1) 거주자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채무대신이 지정한 기부금(이른바 지정교부금) 또는 ③ 공공법인, 공익법인 등 그 밖에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 대한 공헌 그 밖에 공익의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는 일정한 법인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이하 “특정공익증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기부금은 특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공제의 대상이 되고, 그해 중에 지출한 그 기부금의 합계액(그해 분의 총소득금액 등(총소득금액, 토지 등에 관련된 사업소득 등의 금액, 장기양도소득의 금액, 단기양도소득의 금액, 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소득 등의 금액, 선물거래에 관련된 잡소득 등의 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산림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40%가 한도로 되어 있다)에서 5천엔을 공제한 금액을 그해 총소득공액 등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구 소득법 제78조제1항, 제2항, 구 소득법시행령 제217조).

- ① 독립행정법인
- ② 지방독립행정법인으로 일정한 업무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
- ③ 자동차안전운전센터, 일본사법지원센터,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및 일본적십자사
- ④ 민법 제34조(공익법인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 등 특정한 것 또는 교육,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 대한 공헌 그 밖에 공익의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는 업무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

- ⑤ 사립학교법 제3조에서 정하는 학교법인으로 학교의 설치 또는 학교 및 일정한 전수학교 또는 일정한 각종학교의 설치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 또는 사립학교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일정한 전수학교 또는 일정한 각종학교의 설치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
- ⑥ 사회복지법인
- ⑦ 갱생보호법인

2) 공익신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 중에서 그 목적이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 대한 공헌 그 밖에 공익의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는 일정한 것(인정특정공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하기 위해 지출한 금전은 기부금공제의 대상이 되는 특정기부금으로 간주하여 기부금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소득세법 제78조제3항).

3) 또,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라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금 중 일정한 것, 지역재생법에 따라 인정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하는 특정지역고용등촉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또는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특정비영리활동에 관한 사업에 관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기부금으로 간주하여 기부금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조치법 제41조의18제1항, 제41조의18의2, 제41조의19).

4) 기부금공제의 금액은 이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2) 개정의 내용

1) 새로운 법인제도에서는 그 공익목적사업의 실시주체가 되는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은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

사가 민간유식자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공익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법인의 감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신제도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 민법 제34조 법인에 적용되었던 특정공익증진법인제도에서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점, 나아가서는 민간이 담당하는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을 모두 특정공익증진법인으로 위치지우게 되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7조제3호).

이 결과, 개인이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기부금은 특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공제의 대상이 된다.

$$\text{기부금공제 금액} = \frac{\text{지출한 특정기부금의 합계액}}{(\text{총소득금액 등의 40\%를 한도})} - 5\text{천엔}$$

- 2) 개정전의 특정공익증진법인이었던 구 민법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중, 이행인정 또는 이행인가를 받기 전의 이른바 특례민법법인에 대해서는 원활한 신제도로의 이행에 배려하는 관점에서 현행의 과세관계를 계속하는 경과조치가 강구되어졌다. 구체적으로는 거주자가 개정전의 특정공익증진법인이었던 구 민법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대해 이행인정 또는 이행인가의 등기일 전날까지 기부한 경우에 그 기부에 관련되는 지출금에 대해서는 기부금공제의 대상으로 하였다(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제2항)

(3) 적용관계

상기 2의 개정은 일반사단법인·재단법인법의 시행일(2008년12월1일) 이후에 지출하는 특정기부금에 대해 적용되었다(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3. 특정퇴직금공제단체의 요건 개정

(1) 개정전의 제도개요

- 1) 특정퇴직금공제단체가 수행하는 퇴직금공제에 관한 제도(특정퇴직금공제제도)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급부로서 이 제도에 관한 피공제자의 퇴직으로 지불되는 일시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서 연금에 대해서는 공적 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어 있다(소득세법 제31조제3호, 제35조제3항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 제82조의2제2항제1호).
- 2) 이 “특정퇴직금공제단체」란 퇴직금공제사업을 하는 시정촌(특별구를 포함), 상공회의소, 상공회, 상공회연합회, 도도부현 중소기업단체중앙회, 민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퇴직금공제사업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 그 밖에 재무대신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법인으로 그 퇴직금공제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구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 ① 다수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퇴직금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가입사업주만이 분담금을 부담할 것
 - ② 피공제자 중에 다른 특정퇴직금공제단체의 피공제자를 포함하지 않을 것
 - ③ 피공제자 중에 가입사업주인 개인 또는 이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가입사업주인 법인의 임원을 포함하지 않을 것
 - ④ 분담금으로서 지불된 금액은 가입사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을 것
 - ⑤ 분담금으로서 지불된 금액에서 퇴직금공제사업을 하는 단체의 사무에 필요한 경비로서 통상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자산

총액)은 공사채, 예금, 합동운용신탁,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의 자산으로서 운영하고 이들 자산을 담보에 제공하거나 대부하지 않을 것

- ⑥ 분담금의 월액은 피공제자 한 사람에게 대해 30,000엔 이하일 것
- ⑦ 피공제자의 과거 근무기간 또는 합병 등 전근무기간이 있는 경우에, 이들 기간을 퇴직급부금의 액의 계산의 기초에 포함할 때에는 그 퇴직급부금의 액의 계산의 기초에 포함하는 기간 및 그 기간에 대응하는 분담금의 액 및 그 지불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일 것
- ⑧ 퇴직한 피공제자가 독립행정법인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로부터 퇴직금상당액의 인도를 받아 피공제자가 된 자인 경우에는 그 피공제자의 퇴직에 대해 지급하는 퇴직급부금은 그 계산의 기초에 그 퇴직금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인 등 그 밖의 피공제자가 퇴직을 한 경우에 일정한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을 것
- ⑨ 분담금의 액 또는 퇴직급부금의 액에 대해 가입사업주 또는 피공제가 중 특정한 자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취급을 하지 않을 것
- ⑩ 퇴직금공제사업에 관한 경리는 다른 경리와 구분할 것

3) 특정퇴직금공제단체로서의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명칭, 주요한 사무소의 소재지, 퇴직금공제사업의 책임자의 씨명, 그 개시예정연월일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퇴직금공제규정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 74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9조).

위 승인을 신청하는 법인이 민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퇴직금공제규정 이외에 정관 또는 기부행위를 모두 첨부해야 한다(구 소득세법시행령 제74조).

(2) 개정의 내용

1) 공익법인제도개혁으로 구 민법의 공익법인제도로부터 새로운 법인제도로 이행하는 점을 바탕으로, 특정퇴직금공제단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하 “승인신청단체”라 한다)의 대상범위에 퇴직금공제사업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단법인이나 공익재단법인 또는 특례일반법인이 추가되었다(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새로이 승인신청단체에 추가된 “특례일반법인”이란 이른바 특례민법법인으로서 존속하는 구 민법 제34조 법인 중, 이행인정 또는 이행인가의 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이행인가가 취소된 법인 제외)을 말한다.

2) 또, 특정퇴직금공제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이 공익법인인정법에 따라 그 공익인정의 취소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처분 후에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법인은 계속 특정퇴직금공제단체로서 존속할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다만, 그 법인에 대한 공익인정 취소처분의 원인이 특정퇴직금공제단체의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개정전의 제도상 승인신청단체가 된 구 민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제도개혁에 따라 그 근거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필요한 정비가 요구됨과 동시에 개정전의 특정퇴직금공제단체로서의 승인을 받고 있던 구 민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이행인정의 등기에 따라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이 되는 경우도, 이행인가의

등기에 따라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이 되는 경우도 모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특정퇴직금공제단체로서 존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위의 (2), (3)의 경우는 본 특정퇴직금공제제도가 기업이 종업원에 지불하는 퇴직금의 준비로서 기업의 각출의 방법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 특정퇴직금공제단체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세무서장이 승인을 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특정퇴직금공제제도로서의 존속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 4) 공익사단법인이나 공익재단법인 또는 특례민법법인이 특정퇴직금공제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법인의 정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3) 적용관계

- 1) 상기 2(1)에서 (3)까지의 개정은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의 시행일(2008년 12월 1일) 이후에 특정퇴직금공제단체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을 받는 경우에 대해 적용된다(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
- 2) 상기 2(4)의 개정은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의 시행일(2008년12월1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한다(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

4. 국가 등에 대해 재산을 기부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의 비과세제도의 개정

(1) 개정전 제도의 개요

1) 국가 등에 대해 재산을 기부한 경우의 양도소득 등의 비과세

개인이 법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함에 따라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때의 가액(시가) 상당액의 자산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금액이 계산되지만(소득세법 제59조제1항제1호), 이 특례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어 있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전단).

2) 공익법인 등에 대해 재산을 기부한 경우의 양도소득 등의 비과세

① 비과세제도의 개요(국세청장관의 승인 및 승인요건)

민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하는 재산의 제공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 그 증여 또는 유증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관의 승인(이하 “비과세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상기 국가 등에 대한 재산의 증여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구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후단).

이 경우의 “일정한 요건”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말한다(구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후단, 구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 17 제2항).

- 가. 그 증여 또는 유증이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 복지에 대한 공헌 그 밖에 공익의 증진에 현저히 기여할 것
- 나. 그 증여 또는 유증에 관련되는 재산이 원칙적으로 그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날 이후 2년 이내에 그 공익법인 등의 그 증여 또는 유증에 관련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용도로 제공되거나 제공될 예정일 것
- 다. 그 공익법인 등에 대해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함으로써, 그 증여자나 유증자의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이러한 자의 친족등의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것

② 비과세승인취소시의 과세

비과세승인을 받아 공익법인 등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재산이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익법인 등의 그 증여 또는 유증에 관련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용도로 제공되지 않게 된 때 그 밖에 그 증여 또는 유증에 대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청 장관은 그 비과세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비과세승인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때에, 그 때의 시가상당액에 따라 재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서 그 승인취소 해당연도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구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2항, 구 조세특별조치법 제25조의17제8항, 제9항).

③ 공익법인 등이 기부재산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공익법인 등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이유로 양도를 한 경우에는 그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취득한 그 재산에 대체해야 하는 자산으로서

각각에 정하는 자산(이하 “대체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대체 자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을 때에는 비과세증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구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 제2항, 구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의17제7항).

가. 그 재산에 대해 수용 등 또는 환지처분 등에 따른 양도가 있었던 경우, 그 재산에 관련되는 대체자산 또는 교환취득자산

나. 그 증여 또는 유증에 관련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재해가 있었던 경우에, 그 복구를 도모하기 위해 그 자산을 양도한 때, 그 재해를 받은 시설의 용도로 제공되는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토지위에 존재하는 권리

다. 나목의 사업용으로 제공된 시설(그 자산을 그 용도로 제공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그 사업의 수행이 공해 등에 의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또는 그 시설의 규모를 확장하는 경우에서 그 시설의 이전을 하기 위해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이전 후의 시설의 용도로 제공하는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토지위에 존재하는 권리

라. 국가·지방공공단체에 증여할 목적으로 자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비에 충당하기 위해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국가·지방공공단체에 증여하는 목적으로 취득 등을 하는 자산으로 그 취득 등을 한 후 지체없이 국가·지방공공단체에 증여하는 것

마. 학교법인특례의 적용을 받아서 이루어진 증여 또는 유증에 관련되는 재산으로, 학교법인회계기준에 규정하는 기본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던 것을 양도한 때에 그 양도를 한 재산에 대체하는 일정한 자산으로 계속하여 기본금에 포함되는 방법으로 관리되는 것

바.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서 국세청장관이 인정하는 이유에 따라 증여 등에 관련되는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고서 취득한 일정한 자산

④ 공익법인 등이 기부재산을 국가 등에 증여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또는 대체재산(그 재산 또는 대체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그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의 전부에 상당하는 액의 금전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증여한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 등은 그 재산 또는 대체재산을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되지만,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개인이 그 재산을 직접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증여 또는 유증을 한 때에 비과세가 되는 것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비과세승인의 취소사유로부터 제외되고 있다(구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2항).

⑤ 비과세승인이나 불승인 또는 비과세승인의 취소에 관한 통지

국세청장관은 비과세승인을 한 때나 비과세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때 또는 비과세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그 비과세승인을 신청한 자 또는 그 비과세승인을 받았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구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⑥ 불승인또는 비과세승인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의 연체세의 계산

비과세승인에 대해, 불승인결정 또는 승인취소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비과세승인을 신청한 자 또는 비과세승인을 받았던 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에 관한 연체세의 계산에 대해서는 「국세통칙법」 제60조제2항에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취소의 통지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소득세액을 완납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되어 있었다(구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4항).

(2) 개정의 내용

공익법인제도개혁에 따른 새로운 법인제도는 민간에 의한 공익증진을 목적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개혁의 취지를 고려하여 민간이 담당하는 공익활동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상기 1(2)의 공익법인 등에 자산을 기부한 경우의 비과세제도(이하 “본 비과세제도”라 한다)에 대해서도 대상법인의 범위 개정, 비과세승인취소시의 과세방법 개정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한 자산의 기부를 보다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1)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 개정

① 본 비과세제도의 비과세승인의 대상이 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공익목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 민법의 공익법인으로부터 공익법인제도개혁후의 신제도에 따른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그리고 특정일반법인(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 중 일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개정되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이 “특정일반법인”이란 법인세법 별표 제2에 열거하는 비영리형 법인에 해당하는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 중, 법인세법 제2조제9호의2 1목에 열거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그 사업에 따라 이익을 얻을 것 또는 그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적정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청산중에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게 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법인세법 제2조제9의2호 1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가. 그 정관에 잉여금의 분배를 하지 않는 규정이 있을 것

- 나. 그 정관에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공익법인인정법 제5조제17호 소목에서 卜목까지(공익인정의 기준)에 열거하는 다른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인에 귀속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을 것
- 다. 가 및 나의 정관규정에 반하는 행위(가, 나 그리고 라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에, 잉여금의 분배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나 인도 이외의 방법(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을 포함한다)에 따라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결정하거나 한 적이 없을 것
- 라. 각 이사(청산인을 포함한다)에 대해 이사 및 이사의 배우자 또는 삼촌(3寸)이내의 친족 그 밖의 이사와 일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인 이사의 합계수가 이사총수 중 점하는 비율이 3분의 1 이하일 것

준칙주의(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 중 특정일반법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비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가. 대상이 되는 법인에 대해 잉여금의 분배를 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귀속처도 한정되고 있는 등, 본 비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다른 공익법인 등과 같은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점

나. 본 비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하는 재산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익법인제도개혁의 신제도 하에서는 법인의 설립(법인격의 취득)과 공익성의 판단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설립시에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장래 공익인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도 우선은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으로서 설립해야 하는 점

②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서 외국법인은 제외되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이 개정은 외국의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우에, 그 재산이 그 외국의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제공된다는 확인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사정을 고려하여 규정상 명확하게 한 것이다.

2)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개정

본 비과세제도의 비과세증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에는 국외에 있는 토지, 토지위에 존재하는 권리 또는 건물 그리고 그 부속설비나 구축물이 제외되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17제2항). 이 개정도 국외에 있는 토지건물 등을 공익법인 등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한다는 확인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규정상 명확하게 한 것이다.

3) 비과세증인요건의 정비

비과세증인 취소시에 있어서의 과세에 대해 개정전의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자에 대한 과세 뿐만 아니라, 새로이 일정한 취소사유에 경우에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익법인 등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창설되었다. 이러한 개정에도 수반하여, 본 비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된다는 점의 명확화 등, 비과세증인 요건에 대해 필요한 정비가 이루어졌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17제3항부터 제9항).

4) 비과세증인의 취소시에 있어서의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자에 대한 과세의 개정

① 개정후의 과세개요

비과세증인의 취소시에 있어서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과세(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창설에 수반하여, 비과세증인 취소사유에 대

해 그 범위가 개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②가에서 다까지의 사실(비과세승인취소사유)이 발생한 점에 따라 비과세승인의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전의 제도와 같이, 그 공익법인 등에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자에 대해, 그 비과세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날까지에 그 증여를 한 자가 사망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또는 그 유증을 한 자의 그 유증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연도에 있어서, 그 증여 또는 유증에 관한 산림소득의 금액, 양도소득의 금액 또는 잡소득의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2항,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17제10항, 제12항).

② 과세대상이 되는 비과세승인취소사유

비과세승인취소사유는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사실이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2항,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17제10항, 제11항).

가. 비과세승인을 받은 증여 또는 유증에 관련되는 재산 또는 대체 재산이 그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기간내에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익법인 등의 그 증여 또는 유증에 관련되는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은 그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날로부터 국세청장관이 인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안에 그 공익법인 등의 그 증여 또는 유증에 관련되는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았을 것

나. 그 증여 또는 유증에 관련되는 재산 또는 대체재산이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익법인 등의 그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기 전에, 부당감소요건에 해당하게 될 것

“부당감소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란 공익법인 등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증여자, 유증자 또는 이런 자들의 친족 등의 소득

세 또는 상속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증여 또는 유증에 대해 이른바 학교법인특례의 신청서를 제공하여 비과세승인을 받은 자가 그 비과세승인에 관련되는 공익법인 등의 그 증여 또는 유증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 그 증여 또는 유증에 관련되는 재산에 대해 학교법인회계기준의 기본금으로의 편입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금명세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의 사본을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자가 속하는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것(조세특별조치법 제18조의19제7항, 제9항).

“학교법인특례”란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17제7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승인요건의 특례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사립학교진흥조성법에 규정하는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설치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것에 대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인 경우에는 (ㄱ) 그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자가 그 학교법인의 임원 등 및 그 친족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ㄴ)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대체자산이 학교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기본금에 편입되는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을 것, (ㄷ) 그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그 증여 또는 유증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 및 그 재산을 기본금에 편입하는 것이 결정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학교법인으로부터 교부를 받은 서류를 첨부한 비과세승인신청서의 제출이 있었던 때에는 비과세승인요건을 본 비과세제도 본칙상의 요건(상기 1(2)①가에서 다까지의 요건)에서 상기 (ㄱ)에서 (ㄷ)까지의 요건으로 변경하는 것이다(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17제7항, 조세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8조의19제4항부터 제9항). 또 이 학교법인특례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그 신청에 대해 비과세승인이 있었던 것은 그 학교법인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기본금에 편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금명세서 등의 사본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17제9항).

③ 공익법인등이 재산등을 국가 등에 증여한 경우의 개정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익법인 등으로서, 공익법인인정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다른 공익인정의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것(그 처분후에 있어서 계속하여 특정일반법인으로서 본 비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이, 공익법인인정법에서 정하는 공익인정기분에 근거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가 가지는 공익목적 취득재산잔액상당액의 재산 중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또는 대체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③ 및 (5)④에서 “공익인계자산”이라 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증여한 경우에는 그 공익인계자산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또는 대체자산(또는 그 재산이나 대체자산의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의 전부가 아닌 때라 하더라도, 비과세승인의 취소사유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되었다.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17제11항). 또한 공익인정취소에 관련되는 처분사유가 비과세승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③의 적용은 없다.

이는 공익인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공익법인 등이 공익법인인정법의 규정에 따라, 그 정관에 따라 그가 가지는 공익목적 취득재산잔액상당액의 재산을 국가 등에 증여하도록 한 경우, 그 증여하는 재산이 그 공익법인 등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재산 또는 대체자산의 전부에 해당하지 않는 때라 하더라도, 그 국가 등에 대한 증여가 공익

법인인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자면, 비과세승인 취소사유로부터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5) 비과세승인의 취소시에 있어서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과세의 창설

① 과세대상이 되는 국세청장관의 비과세승인의 취소
(비과세승인 취소사유)

국세청장관은 비과세승인에 관련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후, 다음 가에서 다까지의 사실(상기 (4)②가부터 다까지의 사실을 제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과세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17제13항, 조세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8조의19제10항).

가.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익법인 등이 그 증여 또는 유증에 관련되는 재산 등(재산 또는 대체자산((6)의 매환자산을 포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그 공익법인 등의 그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하지 않았을 것(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나. 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에 대해 부당감소 요건에 해당하게 될 것(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17제13항).

다. 그 증여 또는 유증에 대해 이른바 학교법인특례의 신청서의 제출시에 있어서, 그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자가 그 공익법인 등의 임원 및 그 친족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점 및 그 제출시에 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고, 동시에 그 제출 후에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것(조세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8조의19제10항).

② 비과세승인의 취소시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과세의 개요

①의 가부터 다까지의 비과세승인취소사유에 따라, 비과세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비과세승인에 관련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

익법인 등을 그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개인으로 간주하여, 그 공익법인 등에 대해, 그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때에 그 때의 시가상당액에 따라 그 증여 또는 유증에 관련되는 재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서, 그 재산에 관련되는 산림소득의 금액, 양도소득의 금액 또는 잡소득의 금액을 계산하여, 비과세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일까지에 그 증여를 한 자가 사망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유증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후단,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17제15항).

이렇게 일정한 사유에 따라 비과세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을 개인으로 간주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이는 공익법인 등이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산을 일단 그 공익목적사업에 제공한 후에 그 용도로 제공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른바 후발적 사유에 따라 비과세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자가 아니라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익법인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이 경우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과세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확정신고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익법인 등의 주소는 그 주요한 사무소의 소재지이며(조세특별조치법 제25조의17제15항 후단), 그 주소지가 소득세의 납세지가 된다.

③ 비과세승인의 취소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부과된 소득세의 법인세법에 있어서의 취급

②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의 그 소득세액은 공익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금액의 계산상, 손금의 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다만, 그 소득세에 관련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 공익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금액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의 금액의 계산상 익금액에 산입된 경우에는 그 소득세액을 손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4항).

④ 공익법인 등이 기부재산을 국가 등에 증여한 경우의 취급

비과세승인 취소시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도 상기(4)의 비과세승인 취소시의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자에 대한 과세와 같이, (ㄱ)그 공익법인 등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그 재산 등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의 전부에 상당하는 액의 금전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증여한 경우 또는 (ㄴ)그 공익법인 등으로서 공익법인인정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익인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그 처분후에 있어서 계속하여 특정일반법인으로서 본 비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이 공익법인인정법에서 정하는 공익인정기준에 근거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익인계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증여한 경우에는 비과세승인의 취소사유로부터 제외되게 되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17제14항).

6)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제도의 계속의 특례

① 본 비과세제도에 있어서는 공익법인 등에 증여 또는 유증을 하는 재산이 그 공익법인의 공익적 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것이 비과세승인 요건의 하나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공익법인 등이 그 재산을 양도 등의 처분에 따라 그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비과세승인을 취소하고, 그 재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비과세승인 요건은 비과세승인을 받아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에 대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담보하는 것이기는 하나, 증여 또는 유증 후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산의 사용목적이나 가치와 공익법인 등의 하는 공익목적사업이 직접 합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각된다. 그래서 2년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하는 다른 자산(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과 동종의 자산, 토지 및 토지위에 존재하는 권리)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결과, 비과세승인에 관련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익법인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서 취득한 대체자산에 대해서는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과 같이 취급되는 대체자산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구매자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하는 것에 따라, 그 비과세승인에 관련되는 본 비과세제도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5항). 다만, ③의 기간내에 양도수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구매자산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 취득한 구매자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구매자산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게 된 것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대해 비과세승인에 관련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당초의 기부재산)에 관련되는 산림소득의 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잡소득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게 된다.

② 구체적으로 대체자산에 포함되는 구매자산이란 비과세승인에 관련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제공하고 있는 그 증여 또는 유증에 관련되는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취득한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자산(그 재산과 동종의 자산, 토지 및 토지위에 존재하는 권리에 한한다)으로, 그 공익법인 등이 양도일의 전일까지에 그 양도일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그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들 자산을 말한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5

항). 또한 상기의 동종의 자산에는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 있어서의 공사채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포함된다(조세특별조치법 제18조의19제1항).

③ ②의 경우에서 공익법인 등은 그 취득한 구매자산을 양도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기간내에 그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양도일의 다음날로부터 국세청장관이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내에 그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5항 후단,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17제16항).

7) 특정증여 등을 받은 공익법인 등에 대해 합병 등이 있었던 경우의 비과세제도의 계속의 특례의 창설

① 공익법인 등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의 특례

가. 비과세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진 증여 또는 유증(이하 “특정증여 등”이라 한다)을 받은 공익법인 등이 합병으로 특정증여 등에 관련되는 재산 등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공익합병법인”이라 한다)에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의 전일까지 그 합병일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공익합병법인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확인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정증여 등을 받은 공익법인 등의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합병일 이후는 공익합병법인은 그 특정증여 등을 받은 공익법인 등과 그 공익합병법인이 그 이전을 받은 자산은 그 특정증여 등에 관련되는 재산으로 각각 간주하여 본 비과세제도의 규정을 적용한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6항,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17제17항).

나. 가의 경우에 공익합병법인은 이전받은 자산을 합병일의 다음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는 날까지의 기간(그 기간내에 그 공익합병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합병일의 다음날부터 국세청장관이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내에 그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10항). 또한 이 기간내에 그 이전을 받은 자산이 그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게 된 것에 해당하게 된다.

② 공익법인 등이 해산하는 경우의 특례

가. 특정증여 등을 받은 공익법인 등이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으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로 그 공익법인 등의 특정증여 등에 관련되는 재산 등을 다른 공익법인 등(이하 “해산인계법인”이라 한다)에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산일의 전일까지 그 해산일 등의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해산인계법인이 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 것을 확인한 점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정증여 등을 받은 공익법인 등의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해산일 이후는 해산인계법인은 그 특정증여 등을 받은 공익법인 등으로, 그 해산인계법인이 그 이전을 받은 자산은 그 특정증여 등에 관련되는 재산으로 각각 간주하여, 본 비과세제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7항, 조세특별조치법 제25조의17제18항).

나. 가의 경우에 해산인계법인은 이전을 받은 자산을 해산일의 다음날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기간내에 그 해산인계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해산일의 다음날부터 국세청장관이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내에 그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조세특

별조치법 제40조제10항). 또한 그 기간내에 그 이전을 받은 자산이 그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은 것에 해당하게 된다.

- ③ 공익인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공익법인 등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자산을 증여한 경우의 특례

가. 특정증여 등을 받은 공익법인 등으로 공익법인인정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익인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그 처분 후에 계속하여 특정일반법인으로서 본 비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당초법인”이라 한다)이 공익법인인정법 제5조제17호에 따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인정법 제30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익목적 취득재산잔액상당액의 재산(이하 “인계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공익법인 등(이하 “인계법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당초법인이 증여일의 전일까지 그 증여일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인계법인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당초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증여일 이후는 인계법인은 그 특정증여 등에 관련되는 재산으로, 인계법인이 그 증여를 받은 공익인계자산은 그 특정증여 등에 관련되는 자산으로 각각 간주하여 본 비과세제도의 규정을 적용한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8항 전단, 조세특별조치법 제25조의17제18항, 제19항). 또한 공익인정의 취소처분에 관련되는 사유가 비과세승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된다.

나. 가의 경우에 인계법인은 공익인계자산(대체공익인계자산을 포함한다)을, 증여일의 다음날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기간내에 그 인계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것이 곤

란한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증여일의 다음날부터 국세청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내에 그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10항). 또한 이 기간내에 그 증여를 받은 자산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은 것에 해당되게 된다.

다. 가의 경우에, 당초법인은 그 공익인계자산에 대해 그 증여일 이후는 상기(5)의 비과세승인취소시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과세규정은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8항).

④ 특정일반법인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산 등을 증여한 경우의 특례

가. 특정증여 등을 받은 특정일반법인이 특정증여 등에 관련되는 재산 등을 다른 공익법인 등(이하 “수증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정비법 제119조제2항제1호ㄱ목에 열거하는 기부예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증여일의 전일까지 그 증여일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수증공익법인 등이 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정증여 등을 받은 특정일반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는 수증공익법인 등이 그 특정증여 등을 받은 공익법인 등으로, 수증공익법인이 그 증여를 받은 자산은 그 특정증여 등에 관련되는 재산으로, 각각 간주하여 본 비과세제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9항, 조세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5조의17제18항).

나. 가의 경우에 수증공익법인 등은 증여를 받은 자산을 증여일의 다음날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기간내에 그 수증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증여일의 다음날부터 국세청장관이 정

하는 날까지의 기간)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제공해야 한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10항). 또한 이 기간내에 그 증여를 받은 자산이 그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게 된 것에 해당하게 된다.

다. 가의 경우에 수증공익법인 등에 재산의 증여를 한 특정일반법인은 그 증여한 재산에 대해 그 증여일 이후는 상기(5)의 비과세승인취소시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과세규정은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10항)

8) 특정증여 등을 받은 공익법인 등에 의한 서류제출의무의 창설

① 특정일반법인이 공익인정을 받은 경우의 서류제출

특정증여 등을 받은 특정일반법인이 공익법인인정법에 따라 공익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익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특정일반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공익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정일반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11항,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17제20항).

② 공익법인 등이 공익인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의 서류제출

특정증여 등을 받은 공익법인 등이 공익법인인정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익인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공익법인 등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그 처분을 받은 점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관사본을 첨부하여 공익법인 등의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17제21항).

9) 비과세승인이나 불승인 또는 비과세승인의 취소에 관한 통지의 개정

이번 개정에 있어서, 비과세승인의 취소시에 있어서의 과세에 대해, 일정한 취소사유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대해 과세하는 조치가 창설되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비과세승인이나 불승인 또는 비과세승인의 취소에 관한 국세청장관의 통지의 상대방에 대해, 현행의 비과세승인을 신청한 자 또는 비과세승인을 받고 있던 자 이외에 새로이 비과세승인에 관련되는 공익법인 등이 추가되는 등 필요한 정비가 있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12항).

개정후에 있어서는 국세청장관은 다음 ①부터 ③까지에 열거하는 자에 대해, 각각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 ① 비과세승인을 한 경우 : 그 취지를 그 비과세승인을 신청한 자 및 그 신청에 관련되는 공익법인 등에 통지
- ② 비과세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경우 또는 비과세승인을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한 경우 : 그 취지를 그 비과세승인을 신청한 자 또는 비과세승인을 받고 있던 자에 통지
- ③ 비과세승인을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취소한 경우 : 그 취지를 그 비과세승인에 관련되는 공익법인 등에 통지

10) 불승인 또는 비과세승인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의 연체세의 계산의 개정

이번 개정에서 비과세승인의 취소시의 과세에 대해 일정한 취소사유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대해 과세하는 조치가 창설된 점을 바탕으로, 연체세의 계산의 특례에 대해서도 필요한 개정이 있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개정후에 있어서는 다음 ①또는 ②의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에 관련되는 연체세의 계산에 대해서는 국세통칙법 제60조제2항에 불구하고, ①또는 ②의 결정 또는 취소의 통지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소득세액을 완납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13항,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17제22항, 제23항).

- ① 비과세승인에 대해 불승인의 결정 또는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승인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취소의 경우에는 그 취소에 의해 부과되는 소득세의 납부기간후에 있어서 그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그 비과세승인을 신청한 자 또는 비과세승인을 받고 있던 자가 납부해야 할 것이 되는 소득세액
- ②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비과세승인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그 취소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의 그 납부기한후에 있어서 그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그 공익법인 등의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11) 비과세승인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의 기부금공제의 적용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승인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에, 그 비과세승인을 받았던 재산의 증여에 대해 기부금공제의 적용이 있을 때에는, 그 비과세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날까지에 그 증여를 한 자가 사망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망의 날이 속하는 연도)에 있어서 그 비과세승인의 적용을 받았던 증여에 관련되는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해 기부금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17제24항).

12) 특례민법법인이 공익사단·재단법인으로의 이행의 인정 또는 일반사단·재단법인으로의 이행의 인가를 받은 경우의 신고서의 제출 및 특례민법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 ① 특정증여 등을 받은 특례민법법인이 정비법 제44조의 이행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공익법인 등(특례민법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그 공익법인 등의 주요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법 부칙 제50조제3항, 개정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0조제1항).
- ② 특정증여 등을 받은 특례민법법인이 정비법 제45조의 이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공익법인 등(특례민법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그 인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관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그 공익법인 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법 부칙 제50조제3항, 개정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0조제2항)
- ③ ①또는 ②의 특례민법법인이란 개정전의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민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서 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으로서 존속하는 것 중에 정비법 제106조제1항의 이행인정등기 또는 정비법 제121조제1항의 이행인가등기를 하지 않는 것(정비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이행인가를 취소받은 법인에 있어서는 특례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개정법 부칙 제50조제4항).

이 특례민법법인에 대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에 대해서는 구 민법 제34조법인과 같이 공익법인 등에 대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서 본 비과세제도의 대상이 된다.

제 4 장 영국의 Charities Act

제 1 절 체리티의 정의와 체리티법

1. 체리티의 정의

(1) 체리티의 역사

영국에서 체리티 조직의 근대적 개념은 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법령에서 비롯된다. 그 공익법의 리스트에는 고령자나 곤궁자의 구제, 학교의 보수, 교회나 도로의 수리 등 공익성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었다.³⁸⁾

19세기 중엽부터 자유방임주의 경제에 의한 산업구조하에서 중산시민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대립이 격화되고, 동시에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도 심각해졌다. 그에 따라 당시 지배적 사상이었던 공리주의철학은 쇠퇴하고, 국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법사상이 점차 주류가 되었다. 이 시대 1853년 공익신탁법이 제정되고, 1860년 체리티 위원회 설치, 체리티가 제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891년이 되어 공익성의 네 가지 목적, 즉, 「빈곤구제」, 「교육진흥」, 「종교진흥」,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공헌」이 규정되었다.

(2) 체리티의 정의

영국에서는 비영리 섹터를 볼런터리 섹터(voluntary sector)라 하지만, 그 중심적 존재에 있는 조직체가 체리티이다. 영국에서 체리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체가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활동이 사회의 이익(public benefit)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을

38) 稲場圭信, 利他主義・ボランティア・宗教: イギリスにおけるチャリティ, 宗教学年報XVI, 1999.3. 32면.

충족할 필요가 있다. 법형태적으로는 체리티는 보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신탁(trust), 산업공제조합(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 법인격없는 사단(unincorporated association) 및 칙허장이나 법률로 설립되는 단체 등이 있다.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조직체 중, 「체리티위원회」(the Charity Commission)에 신청하고 등록을 인정받아, 체리티 자격(charity status)을 부여받은 것, 즉, 등록된 체리티(registered charities)를 일반적으로 체리티라고 부르고, 체리티 전체를 총칭하여 체리티 섹터(charity sector)라 부른다. 「체리티위원회」는 체리티의 등록, 지원, 규제, 감독을 하는 독립기관이다.

이 정의에 따르자면, 영국의 볼런터리 섹터는 체리티와 체리티 이외의 비영리(not-for-profit)조직으로 구성될 것이지만, 이 용어의 의미는 불명확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영국은 코먼로의 전통으로 인해 성문법의 사회에는 없는 유연성과 점진성을 갖추고, 국가와 시장의 외에는 상당히 명확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지만, 그 공간은 미국에 비해 극히 복잡하다”, “영국의 볼런터리 섹터는 구분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놀라울 정도로 혼란스런 조직의 집합체이며”, 볼런터리 섹터라고 하면 “등록 체리티에 이목이 집중되기 쉽지만”, “체리티는 볼런터리 섹터의 반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되고 있다.³⁹⁾

2. 체리티법

영국의 체리티법은 코먼로의 법적 환경 아래에서 형성되어 왔지만, 그 기원은 1601년의 「the Statute of Charitable Uses 1601」(통칭 「엘리자베스법」, the Statute of Elizabeth)에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⁴⁰⁾ 이 법률

39) Salamon, L. P. and Anheier, H. K.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16-17p.

40) 稲場圭信, 利他主義・ボランティア・宗教: イギリスにおけるチャリティ, 宗教学

의 전문(the Preamble)이 체리티에 관한 정의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한다.⁴¹⁾ 이 시점부터 기산하자면 체리티법은 400년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지만, 체리티에 관한 입법활동은 결코 활발하지 않았고, 관리적인 면은 체리티 위원회와 같은 관계기관(agency)에 맡겨져서, 법적인 문제는 그 때에 따라(ad hoc basis) 고등법원에 의해 판단되어 왔다. 몇 가지 중요한 입법이 있었지만, 이러한 법률은 현행의 코먼로에 따른 체리티의 운영을 강화, 규제, 개선하기 위한 것이 중심이다. 한편, 체리티의 정의는 1958년의 「공익레크리에이션법」에서 한정적인 정의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코먼로에 의존하고 있다.

2006년 법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체리티의 운영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률은 1993년의 「체리티법」이었다. 1993년의 체리티법은 1992년 체리티법의 개정부분을 합체한 것이다. 그 밖의 부분, 즉 1992년 법의 파트Ⅱ와 Ⅲ(전자는 자금모금, 후자는 공공의 장소에서의 모금활동에 관한 규정)는 합체되지 않았다. 또 「공익레크리에이션법」도 합체되지 않았다. 「공익레크리에이션법」은 체리티의 정의를 다루고 있고, 오로지 체리티의 규제를 다루는 「1993년 체리티법」과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⁴²⁾

이처럼 체리티의 법체계는 체리티의 정의는 코먼로에 의존하고, 규제나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은 체리티 위원회의 권한강화 등을 규정하는 성문법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 법률(성문법)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1853년 「체리티 신탁법(The Charitable Trust Act 1853)

이 법률에 의해 체리티 위원회의 설치가 규정되었다.

年報 X VI, 1999.3. 32면.

41) 網倉章一郎、英国のチャリティ改革を読む、「城西国際大学紀要」第13巻第1号、2005年、13-14頁.

42) Luxton, Peter, The Law of Char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2p.

② 1958년 「공익레크리에이션법」(The Recreational Charities Act 1958)

레크리에이션이나 레저를 위해 사용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체리티로 인정된다. 본법은 법에 기재된 목적 등 규정에 합치하는 것을 체리티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는 코먼로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③ 1960년 「체리티법」(The Charities Act 1960)

체리티의 감독을 체리티 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체리티의 등록의무제를 도입, 신탁이외에 회사법의 의하는 것, 법인격없는 단체 등도 체리티의 대상에 추가되었다.

④ 1992년 「체리티법」(The Charities Act 1992)

체리티 위원회의 등록·규제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고, 체리티에 대한 감독, 감시, 관리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

⑤ 1993년 「체리티법」(The Charities Act 1993)

1960년법과 1992년법의 수정법과 1872년의 「공익신탁자법인격부여법」(The Charitable Trustees Incorporation Act)을 통합하여, 체리티 위원회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여 등록과 규제절차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고, 체리티의 전체구조를 만들어 낸 법률이다.

이러한 전체구조를 수정하여 만든 법률이 2006년 「체리티법」이다.

영국의 「2006년 체리티법」(Charities Act 2006)은 2006년 11월 8일에 여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성립했지만, 이 법률의 목적은 체리티 센터의 활동촉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개혁을 하는 것이다.⁴³⁾

43) 당시 국무대신이었던 Patricia Janet Scotland의 의회심의 모두연설(2005년 1월 20일, 상원 제2회 독회)에서 이 법률의 목적이 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첫째, 모든 체리티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근대적인 법적 구조의 구축

둘째, 정부로부터 독립된 활력과 다양성을 갖춘 활동의 장려

셋째, 효과적 규제를 통한 체리티에 대한 국민의 강한 신뢰감 지속

나아가, 체리티법의 구체적인 개혁을 위해 다음 5가지 점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 체리티의 정의 및 공익(Public benefit)를 위한 필요조건

둘째, 체리티 위원회의 규정(constitution)과 기능(function),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다루는 법원(tribunal)의 창설

셋째, 체리티를 위한 신법인격(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sation, CIO)의 창설

넷째, 법의 효과적이며 대상 체리티의 규모에 따른(proportionate) 적용

다섯째, 체리티를 위한 모금활동에 관한 규제

이처럼, 「2006년 체리티법」은 정부로부터 독립한 다양하면서 활발한 체리티활동에 따라 공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체리티법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영국에 있어서 이 체리티법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체리티 센터로부터의 문제제기에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로 진전했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3. 2006년 체리티법의 구성

「2006년 체리티법」은 4편(parts), 80개조, 부칙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체리티법의 전체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편의 구성을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개관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제1편(Part 1) 체리티와 체리티의 목적

본편은 체리티와 체리티의 목적에 관한 의미(meaning)를 다루고 있고, 본 법률의 기반이 되는 개념의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정의(definition)라고는 하지 않고, 의미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편은 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② 제2편(Part 2) 체리티의 규제

본편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리티 위원회, 체리티 법원의 설치, 체리티를 위한 신법인격의 창설 등, 체리티 개혁의 중핵을 이루는 부분이다.

- (제 1 장) 체리티 위원회의 목적, 기능, 책무, 권한 등
- (제 2 장) 체리티 법원(the Charity Tribunal)의 설치
- (제 3 장) 체리티의 등록, 등록면제 · 등록제외 체리티
- (제 4 장) 체리티 재산에 대한 Cy-pres원칙의 적용
- (제 5 장) 법원 및 체리티 위원회의 체리티에 대한 지원과 감독
- (제 6 장) 법인격없는 체리티의 감사, 회계검사
- (제 7 장) 법인격있는 체리티의 감사, 회계검사
- (제 8 장) 체리티를 위한 신법인격(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sations)의 창설
- (제 9 장) 체리티의 이사(trustees)의 해임, 개인책임, 손해배상책임
- (제10장) 법인격없는 소규모 체리티의 능력
- (제11장) 기금의 소비, 체리티의 합병

③ 제3편(Part 3) 자금모집

체리티, 자선단체, 박애단체 등 자금모집에 관한 규제에 대해 다음 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 1 장) 체리티를 위한 일반으로부터의 모금
- (제 2 장) 자금모집
- (제 3 장) 자금원조에 관한 내각의 대신 등의 권한

④ 제4편(Part 4) 그 밖에 일반적 사항

내각의 주무대신은 본법 시행후 5년 이내에 재검토와 국무대신, 또는 내각 주무대신에 의한 본법의 시행에 있어서 적용되는 룰 등이 9 개조로 정리되어 있다.

본법은 1992년과 1993년의 「체리티법」을 개정한 것으로 비개정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 즉, 「2006년 체리티법」은 전부를 정리한 단일 법률(single Act)은 아니다.

제 2 절 2011년 체리티법의 주요내용

1. 2011년 체리티법의 구성

2011년 체리티법은 2006년 체리티법을 대폭 개정한 것으로 19편 358개조와 11개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다.⁴⁴⁾

Part	Chapter	Section	Title	
	제 1 편			Meaning of “charity” and “charitable purpose”
	제 1 장	1-9	General	일반규정
	제 2 장	10-12	Special provision for this Act	특별규정
제 2 편		13-21	The Charity Commission and the Official Custodian for Charities	체리티위원회 및 체리티를 위한 공인 관리자

44) Chrities Act 2011 참조.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1/25/contents/enacted>

제 4 장 영국의 Charities Act

Part	Chapter	Section	Title	
제 3 편		22-28	Exempt charities and the principal regulator	등록제외 체리티 및 규제당국
제 4 편		29-45	Registration and names of charities	등록절차 및 체리티의 명칭
제 5 편		46-60	Information powers	정보개시
제 6 편		61-129	Cy-près powers and assistance and supervision of charities by court and Commission	체리티 재산에 대한 유사원칙의 적용, 법원 및 체리티위원회의 체리티에 대한 지원과 감독
제 7 편		117-129	Charity land	체리티소유 토지의 처분
제 8 편			Charity accounts, reports and returns	체리티의 회계, 보고의무
	제 1 장	130-136	Individual accounts	개인회계
	제 2 장	137-143	Group accounts	그룹계정
	제 3 장	144-161	Audit or examination of accounts	회계의 감사 또는 검사
	제 4 장	162-173	Annual reports and returns and public access to accounts etc.	연차보고서와 그 보고방법 및 회계의 일반공개 등
	제 5 장	174-176	Powers to set financial thresholds	재정기준의 설정
제 9 편		177-192	Charity trustees, trustees and auditors etc.	체리티의 이사, 감사 등
제 10 편		193-203	Charitable companies etc.	체리티목적 회사
제 11 편			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sations (CIOs)	공익법인 조직
	제 1 장	204-215	General	일반규정
	제 2 장	216-223	Powers, capacity and procedure etc.	권한, 사명, 절차 등
	제 3 장	224-227	Amendment of constitution	정관변경절차
	제 4 장	228-244	Conversion, amalgamation and transfer	조직의 전환, 합병, 이행 절차

Part	Chapter	Section	Title	
	제 5 장	245-250	Supplementary	그 밖의 규정
제12편		251-266	Incorporation of charity trustees	체리티 이사회의 법인화
제13편		267-286	Unincorporated charities	법인격없는 체리티
제14편		287-292	Special trusts	특별신탁
제15편		293-304	Local charities	지역체리티
제16편		305-314	Charity mergers	체리티의 합병
제17편			The Tribunal	분쟁해결
	제 1 장	315-318	General	일반규정
	제 2 장	319-324	Appeals and applications to Tribunal	상소절차
	제 3 장	325-331	References to Tribunal	심리내용의 조회
제18편		332-353	Miscellaneous and supplementary	그 밖의 보칙
제19편		354-358	Final provisions	최종규정
부속문서1(Schedule 1)			The Charity Commission	체리티위원회
부속문서2(Schedule 2)			The official custodian	공인 관리자
부속문서3(Schedule 3)			Exempt charities	등록면제 체리티
부속문서4(Schedule 4)			Enlargement of areas of local charities	지역체리티의 활동범위의 확대
부속문서5(Schedule 5)			Court's jurisdiction over certain charities governed by or under statute	법에 규정된 특정체리티의 재판관할권
부속문서6(Schedule 6)			Appeals and applications to Tribunal	상소절차
부속문서7(Schedule 7)			Consequential amendments	본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령의 개정
부속문서8(Schedule 8)			Transitionals and savings	본법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
부속문서9(Schedule 9)			Transitory modifications	본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령의 개정
부속문서10(Schedule 10)			Repeals and revocations	본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령의 폐지
부속문서11(Schedule 11)			Index of defined expressions	용어색인

2. 체리티의 요건 등

2011년 체리티법은 체리티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제1편제1장제1조에 “체리티목적만으로 설립된 조직체일 것”, “고등법원⁴⁵⁾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내에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체일 것이 규정되어 있다. 체리티는 체리티(공익활동, 또는 자선)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어서, 체리티목적 이외의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제1편제1장제3조에는 체리티 목적으로서 인정되기 위한 활동의 목록이 열거되고 있다.

제4편제22조, 제30조 그리고 부속문서 3에는 체리티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체리티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체리티로서 등록면제 체리티(exempt charity) 및 등록제외 체리티(excepted charity)에 대해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표 9> 체리티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체리티의 요건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체리티	요건	구체례
등록면제 체리티 (exempt charity)	1960년 체리티법 또는 구 체리티 신탁법(1853-1939년)에 따른 전통적 체리티로서 체리티위원회 위원장 또는 교육대신의 권한 또는 재판에 따라 등록면제 체리티가 된 것	- 잉글랜드 고등교육기관 (다만, 옥스포드대학, 캠브리지대학, 다람대학을 제외) - 공제조합으로서의 체리티 - 다수의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 공공주택공급기관 - 그 밖에 위와 관련된 단체 등

45) 고등법원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상급사법기관의 하나로서, 하급 법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한국의 지방법원에 상당하는 치안법원의 공소안건을 다루며, 고등법원의 공소안건은 한국의 고등법원에 상당하는 공소원이 다룬다.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체리티	요 건	구체례
등록제외 체리티 (excepted charity)	체리티위원회의 판단, 또는 국무대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속적 내지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체리티로서 연간 총수입이 100,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것	- 대다수의 기독교회 - 군관계의 체리티 목적 단체
	연간총수입이 5,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것	

영국에는 2013년 9월 30일 현재 163,361개의 체리티가 있으며, 1999년대부터 현재까지 체리티의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연간총수입은 1999년말 약 230억 파운드에서 2012년말 약580억 파운드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연간총수입이 천만파운드 이상의 체리티 1999년말 307개에서 2012년말 958개로 3배이상 증가했으며, 이들 체리티의 연간총수입이 전체 체리티의 연간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9%에서 57.3%로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0> 1999부터 2012년까지의 기본통계⁴⁶⁾

12월31일 현재	체리티 총수	연간 총수입 (£ bn)	대형 체리티의 수 (연간총수입 > £ 10million)	연간총수입 (£bn)	총수입 비율(%)
2012	162,915	58.48	958	33.50	57.3
2011	161,649	55.87	901	31.75	56.8
2010	162,415	53.86	883	30.10	55.9

46) Charity Commission “Sector facts and figures”

<http://www.charitycommission.gov.uk/find-charities/> 참조.

제 4 장 영국의 Charities Act

12월31일 현재	체리티 총수	연간 총수입 (£ bn)	대형 체리티의 수 (연간총수입 > £ 10million)	연간총수입 (£bn)	총수입 비율(%)
2009	160,515	51.74	833	28.26	54.6
2008	168,354	48.40	747	25.67	53.0
2007	169,297	44.55	679	22.41	50.3
2006	168,609	41.26	627	20.10	48.7
2005	167,466	37.86	570	17.59	46.5
2004	166,336	34.86	511	15.84	45.4
2003	164,781	31.62	460	14.19	44.9
2002	162,335	29.45	421	13.04	44.3
2001	160,778	26.71	372	11.42	42.7
2000	159,845	24.56	336	10.27	41.8
1999	163,355	23.74	307	10.19	42.9

또한 2012년말 시점에서 연간총수입이 5백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체리티가 1,831개 단체로 연간총수입이 397억 파운드에 달했고, 이는 전체 체리티의 불과 1.1%의 대형 체리티가 전국 16만여개의 체리티의 연간총수입 합계의 67.9%를 만들어내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수입의 대부분은 고액소득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것에 의한 것으로, 체리티에 대한 기부에 이러한 세액공제의 효과를 정책적으로 높임으로써, 기부에 의한 공익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11> 2012년말 체리티 통계⁴⁷⁾

연간총수입 기준(£)	체리티 수	%	연간총수입 £ bn	%
0-10,000	69,485	42.6	0.230	0.4
10,001- 100,000	53,056	32.6	1.877	3.2
100,001- 500,000	20,015	12.3	4.453	7.6
500,001- 5,000,000	8,115	5.0	12.217	20.9
5,000,000 초과	1,831	1.1	39.703	67.9
소계	152,502	93.6	58.480	100.0
불명	10,413	6.4	0.000	0.0
총계	162,915	100.0	58.480	100.0

3. ‘체리티’와 ‘체리티 목적’의 의미(meaning)

(1) 체리티의 의미

체리티란 체리티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조직체라고 하는 점, 고등법원(High Court)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즉, 잉글랜드와 웨일즈) 안에 존재한다는 점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체라고 규정되어 있다

47) 체리티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는 분기별로 체리티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2013년 9월말의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2012년말 통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Charity Commission “Sector facts and figures”

<http://www.charitycommission.gov.uk/find-charities/> 참조.

(제1조제1항). 체리티의 의미는 2006년 체리티법에서 비로소 규정되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체리티는 오로지 체리티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체로서 체리티 이외의 활동은 금지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⁴⁸⁾

(2) 체리티 목적의 의미

체리티 목적(charitable purpose)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⁴⁹⁾과 공익(public benefit)을 위한 것을 말한다.

- ㉠ 빈곤의 방지 또는 구제
- ㉡ 교육의 진흥
- ㉢ 종교의 진흥
 - 종교는 다음을 포함된다.
 - (i) 하나 이상의 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
 - (ii) 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종교
- ㉣ 건강의 증진 또는 생명의 구조
 - 건강의 증진에는 병, 질환, 고통의 예방 또는 구제를 포함한다.
- ㉤ 시민의식의 또는 공동체 발전의 증진
 - 시민의식, 공동체의 발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i) 지방 또는 도시의 재생
 - (ii) 시민책임, 자원봉사활동, 불런터리 섹터의 추진, 또는 체리티의 효과 또는 효율의 증진
- ㉦ 예술, 문화, 전통, 과학의 진흥
- ㉧ 아마추어 스포츠의 진흥

48) 이러한 규정은 일본의 입법과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공익법인인정법」 제5조제7호는 공익목적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한, 수익사업 등의 수행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세법에 따라서 영국과 같이 공익목적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Section 501(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49) Charities Act 2011 Section 3(1)

- 스포츠란 육체적 내지 정신적 기량(skill), 또는 활동(exertion)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스포츠나 게임을 말한다.
- ⓑ 인권, 분쟁해결 또는 조정의 진흥, 종교적 내지 인종적 조화, 또는 평등과 다양성의 촉진
- ⓒ 환경의 보호 또는 개선의 추진
- ⓓ 청소년, 고령, 병약, 장애, 경제적 곤궁 그 밖에 약점에 의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구제
- 위에서 열거한 사람들에 대한 시설 또는 보호의 제공을 통한 구제를 포함한다.
- ⓔ 동물복지의 증진
- ① 군대의 효율성 촉진과 경찰, 소방, 응급구조에 관한 서비스의 효율성 촉진
- “소방과 응급구조 서비스”란 「2004년 소방·구조활동법」(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c.21)) 제2편에서 규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 (i) 위 목적의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레크리에이션 법 또는 오래된 법에 따라 체리티 목적으로 인정되는 목적
- (ii) 위 항목과 ㉠에서 ①까지의 항목과 유사성이 있는 것, 또는 그 정신에 따른 것임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목적
- (iii) 위 항목 및 본항에 합치하는 것으로 인정된 목적과 유사한 것, 또는 그 정신에 따른 것임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목적

열거항목의 ㉠에서 ①까지 12종류의 개별 목적을 다루고 있지만, ⓕ은 코먼로의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다. 즉, ⓕ은 ㉠에서 ①까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체리티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체리티 목적」으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㉞에서 ㉠까지의 목적에 대해, 유사성이 있는 것, 또는 법의 정신에 따라서 체리티 목적이라고 ‘합리적으로’(reasonably)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체리티 목적」으로서 인정하고, 나아가 추가된 ‘목적’에 대해서도 유사성과 법의 정신에 합치성을 가지는 것을 「체리티 목적」으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 ㉡이 규정되어 있다.

(3) 「공익 요건」

이미 언급한 (1), (2)에 따르자면, “체리티”는 “체리티 목적”만을 위해 존재하고, 그 “체리티 목적”은 사회에 대해 “공익”(public benefit)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후자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공익 요건”이다. 「2011년 체리티법」은 이에 관해 다음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4조).

첫째, “체리티 목적”이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해 설립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 “공익”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 목적이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미리 추정(presume)해서는 아니 된다.

이 후자의 규정은 종래 관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1601년의 「공익사용법」(the Charitable Uses Act 1601) 이래 빈곤의 구제, 교육의 진흥, 종교의 진흥(위에서 언급한 체리티 목적의 의미에서 ㉞, ㉟, ㊱에 해당)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여겨져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직은 특별히 그러하지 않다는 증거가 없는 한 “공익”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자동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 이외의 조직은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 추정을 배제하고, 모든 조직을 같은 조건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4) 공익에 관한 지침

체리티법은 “체리티 목적”의 리스트를 정하고, 그 목적이 “공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공익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법에서 정하지 않고, 퍼블릭 베니피트의 목적은 체리티 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체리티 위원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위원회는 퍼블릭 베니피트의 수행에 관련되는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지침은 체리티 목적이 퍼블릭 베니피트의 수행에 있다는 점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지침을 내리기 전 또는 개정시에는 개정전에 의견청취를 실시해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지침 또는 그 개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⑥ 체리티의 이사는 그 책무의 수행 및 권력의 행사에 관해서는 지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다.

지침작성은 위원회의 역할 및 책무이다. 「2006년 체리티법」은 퍼블릭 베니피트에 대한 정의를 직접하지 않고, 위원회에게 퍼블릭 베니피트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도록 의무지우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체리티법」은 체리티의 이사가 지침에 따르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4. 체리티 위원회의 책무와 권한

(1) 체리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적어도 1853년의 「체리티신탁법」 이래 그 존재가 계속되고 있는 행정상의 조직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률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조직으로서 존속하여 왔다. 약 16만에 달하는 체리티를 관할하는 위원회가 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존재였던 것은 담당대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위원회의 특징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체리티법은 위원장을 폐지하고, 법인격을 가진 조직으로서 체리티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그 존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위원회는 국왕을 위해(on the behalf of the Crown), 즉 국가를 위해 그 역할을 한다(제13조제3항).
-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대신, 어떠한 정부부처로부터도 지시(direction)나 통제(control)를 받지 않는다(제13조제4항). 다만, 법률에 따르며(제13조제5항(a)), 위원회의 지출에 대해서는 재무성(Treasury)에 의한 행정적 통제를 받는다(제13조제5항(b)).
- 부속문서 1에는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제13조제6항).

부속문서 1에 의하면 위원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내무대신에 의해 지명되는 의장과 4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무대신은 위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첫째, 체리티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

둘째, 체리티의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
셋째, 다양한 규모와 내용의 체리티의 운영과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적어도 2명의 위원은 「1990년 법원 및 법적 서비스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7년 이상 가지고 있을 것(부속문서 1 제1조제2항(b)).

적어도 1명의 위원은 웨일즈의 사정에 관해 알고 있으며, 웨일즈 대신과 협의를 거쳐서 임명될 것(부속문서 1 제1조제2항(c)).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통산 10년을 넘어서도 아니 된다.

(2)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등

1) 위원회의 목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제14조).

- ① 공적 신뢰를 증진(The public confidence objective) : 체리티에 대한 사회의 신임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
- ② 공익 증진(The public benefit objective) : 공적 이익 활동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 ③ 법령준수 증진(The compliance objective) : 체리티의 이사가 체리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
- ④ 자원의 효과적 활용 증진(The charitable resources objective) : 체리티가 가진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증진하는 것
- ⑤ 설명책임(The accountability objective) : 기부자, 수익자, 일반시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향상시키는 것

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법 제15조).

- ① 조직에 대한 체리티 인정
- ② 체리티의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 ③ 체리티의 행정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조사하며, 부정행위 내지는 경영실수에 대한 구제책이나 예방책의 강구
- ④ 모금활동의 인가서의 발행 또는 그 계속의 판단
- ⑤ 위원회의 기능이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과 관련되는 정보의 입수, 평가, 발신
- ⑥ 위원회의 기능이나 목적 수행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정부의 대신에 대해 정보제공, 조언, 제언을 하는 것

(3) 위원회의 일반적 의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의무를 지닌다(법 제16조).

- ① 위원회는 가능한 한 다음의 방법으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위원회의 목적에 적합한 방법
 -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
- ② 위원회는 가능한 한 다음의 것을 장려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체리티를 위한 모든 종류의 기부
 - 체리티 활동에 자발적 참여
- ③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그 자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가 있는 한 규제를 함에 있어서의 최상의 규제사례 원칙에 따라야 한다(규제활동은 규제

대상의 규모에 적합한 것일 것. 설명가능할 것. 일관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을 것, 필요성이 있는 곳만을 대상으로 할 것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 ⑤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그것이 적당한 경우에는 체리티에 따라 또는 체리티를 위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그 활동을 관리함에 있어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거버넌스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식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연차보고 및 연차총회

1) 연차보고

위원회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부속문서1 제11조).

- ① 그 기능의 실시상황
- ② 그 목적의 달성상황
- ③ 일반적 의무의 수행 상황
- ④ 위원회업무의 운영상황

위원회는 보고서 한 부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계연도는 3월 31일에 끝나는 12개월로 한다.

2) 연차총회

위원회는 연차보고의 심사를 받기 위해 연차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부속문서1 제12조).

연차총회는 연차보고서의 발행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연차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연차보고서에 관한 심의
- ② 연차보고서의 관계 사항에 대해 출석자에게 질문의 기회 부여

위원회는 연차총회의 개최가 가능한 한, 모든 등록 체리티에게 통지되도록 하고, 일반 시민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연차총회의 통지를 발표해야 한다.

5. 체리티 법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제소(appeals)와 심사청구(applications)에 관한 일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으로서 체리티 법원이 있다.

1) 체리티 법원의 관할권(Jurisdictions)

체리티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decisions), 명령(orders), 또는 지령(directions)에 관한 제소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법무장관에 의해 체리티 법원에 조회(reference)된 사항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2) 심리의 절차 및 진행(Practice and procedure)

대법관이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진행에 대해 규칙을 정한다.

- ① 체리티 법원에 대한 제소권 또는 심사청구권의 행사 및 체리티 법원에 대한 조회사항의 처리방법
- ② 체리티 법원에서의 심리(proceedings)에 관한 절차 및 진행

제소, 심사청구, 조회에 관한 규칙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 ① 제소, 심사청구, 회부가 이루어지기 전에 취해야 할 절차

- ② 위원회의 결정, 지령, 명령 후, 제소나 심사청구할 것이 인정되는 기간
- ③ 위원회가 상기의 기간을 관계자에게 알릴 것
- ④ 제소, 심사청구, 조회에 관한 방식의 상세를 정하는 것

대법관이 정하는 규칙(rules)은 법률문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그 취소는 상원이나 하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6. 체리티 운영을 위한 주요구조

(1) 체리티의 등록

모든 체리티는 다음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리티 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① 등록면제 체리티(exempt chartity)

등록면제 체리티는 체리티 위원회 이외의 공적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들 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즉, 등록면제 체리티는 체리티 위원회에 등록도 하지 않고, 그 규제도 받지 않는 존재이며, 2011년 체리티법의 부속문서(Schedule 3)에 등록면제 체리티가 규정되어 있다.

국무대신(Secretary of State)은 등록면제 체리티의 인가, 폐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즉, 등록면제 체리티 리스크의 변경은 국무대신의 권한이지만, 리스트로부터 부적격하게 된 체리티를 제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리스트에 추가할 수도 있다.

소관의 공적기관이 충분한 감독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체리티 위원회가 관여할 필요성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체리티 위원회가 등록면제 체리티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관의 공적기관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② 등록제외 체리티(excepted charity) : 체리티위원회에 의해 일시적으로나 영속적으로 예외적으로 등록을 요하지 않게 된 체리티로서, 연간총수입 100,000 파운드를 넘지 않을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다.

등록제외 체리티는 체리티 위원회에 등록할 의무는 없지만, 체리티 위원회의 규제는 받는다. 등록제외 체리티는 연간총수입이 100,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다.

③ 국무대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나 영속적으로 등록제외된 체리티로서 연간총수입이 100,000파운드를 넘지 않는 것

④ 연간총수입이 5,000파운드를 넘지 않는 것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위의 체리티 중에서 원한다면 체리티 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체리티의 이사는 등록해야 할 체리티를 체리티 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체리티 위원회에 필요한 정보나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2) 이사의 보수와 책임

1) 이사의 보수

이사 및 관계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체리티로부터 보수(benefit)를 받을 수 있다.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사 및 그 관계자와 체리티와의 사이에 문서에 의한 합의(agreement)가 있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합의된 금액의 최고치를 넘지 않을 것. 또 제공된 서비스의 관점에서 그 금액이 타당(reasonable)할 것

② 합의를 교환하기 전에, 체리티의 이사들이 합의서에 기재된 지불액 및 그 상한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체리티를 위해 또는 체리티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릴 것

③ 합의서가 교환되는 시점에서 지불을 받을 이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사총수에서 점하는 비율이 소수일 것

④ 체리티의 정관 등에 이사 또는 그 관계자에게 지불을 금하는 규정이 없을 것

⑤ 합의서를 교환할 때에는 이사들은 이 결정이 체리티 위원회의 지침 및 선관주의(duty of care)에 따른 것이 되도록 할 것

⑥ 지불을 받는 이사는 합의서 또는 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이사로서 참가할 자격을 상실할 것, 즉 무자격이사(disqualified trustee)가 될 것

⑦ 이에 위반하여 무자격이사가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그 이사 및 그 관계자가 지불을 받은 경우 또는 받게 된 경우에는, 체리티 위원회가 무자격이사에 대해 수급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것, 또는 보수가 어떠한 형태의 이익(benefit)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의 전액 또는 체리티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할 것

2) 이사의 책임

체리티의 이사가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고, 금전적인 부담을 맡아야 할 잠재적 리스크로부터 이사를 구제하기 위한 방책이 규정되어 있다.

① 이사가 이사로서의 자격으로 행동하고, 신탁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이사가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신탁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으로부터 정당하게 면책되어야 할 때에는 체리티 위원회가 그 책임의 전체 또는 그 일부로부터 당해 이사를 면책시키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다만, 이 규정은 이사와 체리티와의 사이의 계약관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이사에 면책을 부여하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3)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보험의 가입

이사가 체리티를 위해 행동하고, 그 결과, 개인적으로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 체리티가 체리티의 비용으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189조).

① 체리티의 이사가 이사의 자격으로 행동하여 신탁위반이나 의무불이행을 할 경우, 또는 이사장, 임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체리티를 위해 행동하여 과실, 채무불이행, 의무불이행 또는 신탁위반을 할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될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을 체리티의 자금을 사용하여 가입할 수 있다(법 제189조제1항).

② 이 손해배상보험은 다음 사항에 관한 손해배상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법 제189조제2항).

- 범죄와 관련되는 벌금(a)
- 법률위반에 따른 패널티, 사기나 불성실하고 의도적인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기인하는 범죄행위로 유죄가 된 경우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변호활동 비용(b)
- 체리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식하거나 의식했던 것으로 여겨지거나 체리티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한 행위에 따라 체리티에 발생한 책임(c)

이처럼, 체리티법은 이사의 행동에 관한 면책과 손해배상 가입을 인정하고, 이사의 개인적 리스크를 감소시켜서, 이사를 맡게 되는 것이 용이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전한 체리티의 경영을 위해서는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 이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 5 장 공익법인제도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

1.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1) 공익사업 유형의 유연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조금 지원사업의 결정과 사업비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의 유형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7조에서 공익사업의 유형으로 규정되고 있는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며 유형 상호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의 공익사업의 유형에 관한 기준을 공익사업 인정기준으로서 소극기준으로 설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바꾸고, 공익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정책이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상황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유형을 자유로이 설정하고 구체적 지원사업 선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매년 공익사업의 유형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매년 달리 정하기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유형을 정해두고 세부 사업내용만 달리하는 것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다년간에 걸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보조금의 지원주체 및 선정주체

① 지원주체의 확대

지원주체를 현행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확대하여 보다 시민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행정주체가 지원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에 밀착한 시민공동체로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보충성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역할 재설정

현행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안전행정부와 시·도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공익사업유형의 결정부터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그리고 사업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공익사업유형 결정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고,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은 위원회가 하며, 사업평가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구조를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며, 단순히 경제적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인큐베이터의 역할부터 육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와 민간의 중간적 위치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행 지원이 지원사업의 일회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한 사업에 대한 다년간 지원을 가능하도록 할 경우에는위원의 임기를 보다 장기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사업의 선정, 실행, 평가, 환류로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사업평가제도의 개선

① 평가주체의 명확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 결과가 차기년도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의 운영개선에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사업 제도에 있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평가에 관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평가주체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서 되어 있으나, 실제 평가는 외부용역기관이 실시하거나, 서울시와 같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구성한 평가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위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중간평가 등을 위해서는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평가단과 같은 조직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평가주체 등에 관한 규율밀도를 강화하여 평가에 관한 객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시민 일반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수 있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평가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평가절차 및 방법의 예측가능성 보장

위에서 살핀 평가주체의 명확화와도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나, 평가주체에 따라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평가등급, 평가등급에 따른 차기년도 평가반영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평가절차는 안전행정부 또는 시·도의 지침에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법령에서 미리 정해두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평가를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각 단계에서 실시하는 평가의 항목 등을 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 또는 그 등급에 따른 페널티가 무엇인지를 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민법의 비영리법인을 순수한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 민법상 법인에 관한 개정시안이 작성된 바 있고,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p>第32條(非營利法人의設立과許可) 學術, 宗教, 慈善, 技藝, 社交其他營利아닌事業을目的으로하는社團또는財團은主務官廳의許可를얻어이를法人으로할수있다</p>	<p>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인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인 이상의 사원이 있을 것 2. 제40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4. 그 밖에 법인 설립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였을 것 <p>②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	---

2.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3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 2.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출연할 것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출 것 <p>③ 주무관청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인가하여야 한다.</p>
--	---

이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종래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에 대한 재량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가하도록 행정청을 기속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 인가기준을 보자면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적극요건으로 5인 이상의 사원, 정관, 관련 규정 준수를 정하고 있고, 소극요건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정하고 있다.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적극요건으로 정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관련 규정 준수를 정하고 있고, 소극요건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공익성 유무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거의 없어서, 순수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민법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민법적 접근에 따른 법개정이 되었을 경우에, 공익법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312)은 임기만료 폐기되었는 바, 향후 민법의 법인제도 개혁은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의 측면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익법인 관련 제도창설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3. 공익법인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제

(1) 공익목적사업의 종류와 범위 확대

「공익법인법」에서 인정하는 공익목적사업의 종류를 현재와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할 것이 아니라, 보다 분명하게 비영리법인이 모두 포섭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본의 공익법인인정법, 영국의 체리티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다 다양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목적사업의 종류 내지 범위에 관해서는 이미 살펴본 일본과 영국의 관련 법제가 참고할 만 것이라 생각된다.

<표 12> 일본의 영국의 공익목적사업의 종류 내지 범위

일본의 공익법인인정법상 공익목적사업	영국의 체리티법상 공익목적사업
1. 학술 및 과학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① 빈곤의 방지 또는 구제
2. 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교육의 진흥
3. 장애인, 생활곤궁자 또는 사고, 재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③ 종교의 진흥 - 종교는 다음을 포함된다.
4. 고령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i) 하나 이상의 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 (ii) 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종교
	④ 건강의 증진 또는 생명의 구조

일본의 공익법인인정법상 공익목적사업	영국의 체리티법상 공익목적사업
<p>5. 근로의욕이 있는 자에 대한 취로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6. 공중위생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7. 아동 또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8.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9. 교육, 스포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하거나 풍부한 인간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10. 범죄의 방지 또는 치안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11. 사고 또는 재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12. 인종, 성별 그 밖의 사유로 부당한 차별 또는 편견의 방지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13.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존중 또는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14. 남녀공동참가사회의 형성 그 밖에 보다 좋은 사회의 형성을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15. 국제상호이해의 촉진 및 개발도상에 있는 해외의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16. 지구환경의 보전 또는 자연환경의 보호 및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 건강의 증진에는 병, 질환, 고통의 예방 또는 구제를 포함한다.</p> <p>㉔ 시민의식의 또는 공동체 발전의 증진</p> <p>- 시민의식, 공동체의 발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p> <p>(i) 지방 또는 도시의 재생</p> <p>(ii) 시민책임, 자원봉사활동, 불런터리 섹터의 추진, 또는 체리티의 효과 또는 효율의 증진</p> <p>㉕ 예술, 문화, 전통, 과학의 진흥</p> <p>㉖ 아마추어 스포츠의 진흥</p> <p>- 스포츠란 육체적 내지 정신적 기량(skill), 또는 활동(exertion)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스포츠나 게임을 말한다.</p> <p>㉗ 인권, 분쟁해결 또는 조정의 진흥, 종교적 내지 인종적 조화, 또는 평등과 다양성의 촉진</p> <p>㉘ 환경의 보호 또는 개선의 추진</p> <p>㉙ 청소년, 고령, 병약, 장애, 경제적 곤궁 그 밖에 약점에 의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구제를 위하여</p> <p>- 위에서 열거한 사람들에 대한 시설 또는 보호의 제공을 통한 구제를 포함한다.</p> <p>㉚ 동물복지의 증진</p> <p>㉛ 군대의 효율성 촉진과 경찰, 소방, 응급구조에 관한 서비스의 효율성 촉진</p>

일본의 공익법인인정법상 공익목적사업	영국의 체리티법상 공익목적사업
17. 국토의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18. 국정의 건전한 운영의 확보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19.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0.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기회의 확보 및 촉진 및 그 활성화에 따른 국민생활의 안정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1.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물자, 에너지 등의 안정공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2. 일반 소비자의 이익옹호 또는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3. 그 밖에 공익에 관한 사업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	- “소방과 응급구조 서비스”란 「2004년 소방·구조활동법」(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c.21)) 제2편에서 규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㉓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i) 위 목적의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레크리에이션 법 또는 오래된 법에 따라 체리티 목적으로 인정되는 목적 (ii) 위 항목과 ㉓에서 ①까지의 항목과 유사성이 있는 것, 또는 그 정신에 따른 것임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목적 (iii) 위 항목 및 본항에 합치하는 것으로 인정된 목적과 유사한 것, 또는 그 정신에 따른 것임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목적

(2) 공익인정기준의 설정

이처럼 공익목적사업을 보다 넓게 설정하고, 그 중에서 일정한 공익 인정기준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는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표 13> 일본과 영국의 공익인정기준

일본 공익법인인정법상 공익인정기준	영국 체리티법상 공익인정기준
1. 공익목적사업을 주요한 목적을 할 것	첫째, “체리티 목적”이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해 설립된 것이어야 한다.

3. 공익법인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제

일본 공익법인인정법상 공익인정기준	영국 체리티법상 공익인정기준
<p>2. 공익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리적 기초 및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p> <p>3. 그 사업수행에 있어 사원, 평의원, 이사, 감사, 사용인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자에 대해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지 않을 것</p> <p>4. 그 사업수행에 있어 주식회사 그 밖의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기부 그 밖의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다만, 공익법인에 대해 당해 공익법인이 하는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기부 그 밖의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투기적 거래, 고리의 용자 그 밖의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공공의 질서 내지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것</p> <p>6. 그 공익목적사업에 대해 당해 공익목적사업에 관련되는 수입이 그 실시요하는 적정한 비용을 충당하는 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일 것</p>	<p>둘째, “공익”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 목적이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미리 추정(presume)해서는 아니 된다.</p>

일본 공익법인인정법상 공익인정기준	영국 체리티법상 공익인정기준
<p>7. 공익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이하 “수익사업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등을 함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의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p> <p>8. 그 사업활동에서 제15조의 공익목적사업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것</p> <p>9. 그 사업활동에서 제16조제2항의 유휴재산액이 동조 제1항의 제한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것</p> <p>10. 각 이사에 대해서 당해 이사, 그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관계(이러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당해 이사와 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이사의 합계수가 이사의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감사에 대해서도 그러하다.</p> <p>11. 다른 동일한 단체(공익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이사 또는 사용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인 이사의 합계수가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감사에 대해서도 그러하다.</p> <p>12. 회계감사인을 두고 있을 것. 다만, 당해 법인의 매사업연도의 수익, 비용, 손실 그 밖에 정령으로</p>	

일본 공익법인인정법상 공익인정기준	영국 체리티법상 공익인정기준
<p>정하는 감정액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3. 그 이사, 감사 및 평의원에 대한 보수 등(보수, 상여 그 밖에 직무 수행의 대가로서 받는 재산상의 이익 및 퇴직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임원의 보수 등 및 종업원의 급여, 당해 법인의 경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고액이 되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을 것.</p> <p>14. 일반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가.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사원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을 것</p> <p>나. 사원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 의결권의 행사조건 그 밖에 사원의 의결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1) 당해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사원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을 것</p>	

일본 공익법인인정법상 공익인정기준	영국 체리티법상 공익인정기준
<p>(2) 사원이 당해 법인에 제공한 금전 그 밖에 재산의 가액에 따라 사원의 의결권에 다른 대우를 하지 않을 것</p> <p>다. 이사회를 두고 있을 것</p> <p>15. 다른 단체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주식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당해 재산의 보유에 따라 다른 단체의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6.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불가결한 특정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유지와 처분의 제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있을 것</p> <p>17. 제2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공익인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이 공익법인일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공익목적취득재산잔액(제30조제2항의 공익목적취득재산잔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액의 재산을 당해 공익인정의 취소의 날 또는 당해 합병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법인 또</p>	

일본 공익법인인정법상 공익인정기준	영국 체리티법상 공익인정기준
<p>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증여하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고 있을 것</p> <p>가. 사립학교법 제3조의 학교법인</p> <p>나. 사회복지법 제22조의 사회복지법인</p> <p>다. 갱생보호사업법 제2조제6항의 갱생보호법인</p> <p>라.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제1항의 독립행정법인</p> <p>마. 국립대학법인법 제2조제1항의 국립대학법인 또는 동조 제3항의 대학공동이용관계법인</p> <p>바.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조제1항의 지방독립행정법인</p> <p>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에 열거하는 법인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p> <p>18.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유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법인 또는 전호 가부터 사에 열거하는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귀속시키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고 있을 것</p>	

(3) 공익인정위원회의 창설 및 권리구제 제도

공익인정위원회의 창설은 공익법인법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법인법의 제도개선에 있어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 사업의 선정이나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공익법인법에서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공익법인법이 민법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계에서 오는 귀결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 순수한 비영리법인으로 분리되고, 공익법인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공익성인정에 관한 주체를 현행과 같은 독임제의 주무관청이 아니라 영국의 체리티 위원회와 같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 등에게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방식과 일본의 공익인정위원회와 같이 행정청에 자문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과 일본의 각 위원회는 기능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익인정의 실질적 주체라고 점에서는 공통된다.

공익인정에 관한 이의제기 또는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보자면, 영국에서의 체리티에 대한 공익인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체리티 법원에 의해 구제될 것이고, 일본의 공익인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행정청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구제될 것이다.

공익인정에 관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이나 권고에 그치는 일본의 위원회 방식이 아니라, 체리티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영국의 체리티위원회를 모범으로 하고, 이의제기나 권리구제는 항고쟁송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제도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건강보험통계연보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 김대정, 법인법개정안 해설, 법인·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10.12.21
- 김동희, 행정법 I [제17판], 박영사, 2011
- 김중권, 민법개정시안상 법인설립 등에 대한 국가개입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11.6.20. 김대정, 법인법개정안 해설, 법인·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10.12.21.
- 서울특별시, 2013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2013.3.26
- 서울특별시시장,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347호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 서울특별시시장,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042호 ‘2013년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 수시공모 공고’
- 안전행정부,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2013.5
- 안전행정부,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통권 제15호), 2013.6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3년 교육통계연보
- (사)한국사회문화연구원, 2010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2011.03

참 고 문 헌

(사)한국정책과학학회, 2011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2012.03

안전행정부, 2014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수요조사서

이중기, 공익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2009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장경원, EU행정법의 작동원리로서의 보충성의 원칙, 행정법연구 제17호
(2007.5),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귀현, 지방자치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3권제
3호(2012.8), 한국비교공법학회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408호 ‘201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2013년 1월 3일

< 외 국 문 헌 >

内閣府、監督の基本的考え方、平成20年11月21日

全国公益法人協議会編, 公益法人制度改革 3法, 全国公益法人協会, 2006
公益認定等委員会、公益認定等に係る審議の中立性・公正性の確保につ
いて、2007年10月19日, 公益認定等委員会 決定第2号

政府税制調査会、「抜本的な税制改革に向けた基本的考え方（平成19年
11月）」

稲場圭信, 利他主義・ボランティア・宗教：イギリスにおけるチャリティ,
宗教学年報XVI, 1999.3.

網倉章一郎、英国のチャリティ改革を読む、「城西国際大学紀要」第13卷
第1号、2005年

民間NPO支援センター・将来を展望する会, 「行政と協働するNPOの8
つの姿勢」 참조.

Salamon, L. P. and Anheier, H. K.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Luxton, Peter, The Law of Char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부 록

【 부록 1 】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⁵⁰⁾**

(2006년 6월 2일 법률 제49호)

제 1 장 총 칙(제1조-제3조)

제 2 장 공익법인의 인정 등

제 1 절 공익법인의 인정(제4조-제13조)

제 2 절 공익법인의 사업활동 등

제 1 관 공익목적사업의 실시 등(제14조-제17조)

제 2 관 공익목적사업재산(제18조)

제 3 관 공익법인의 계산 등의 특칙(제19조-제23조)

제 4 관 합병 등(제24조-제26조)

제 3 절 공익법인의 감독(제27조-제31조)

제 3 장 공익인정등 위원회 및 도도부현에 설치되는 합의제 기관

제 1 절 공익인정 등위원회

제 1 관 설치 및 조직(제32조-제42조)

제 2 관 자문 등(제43조-제46조)

제 3 관 잡칙(제47조-제49조)

제 2 절 도도부현에 설치되는 합의제 기관(제50조-제55조)

제 4 장 잡 칙(제56조-제61조)

제 5 장 별 칙(제62조-제66조)

부 칙

50) 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八年六月二日法律第四十九号）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률은 국내외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민간의 단체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익의 증진에 중요하게 되어 당해 사업을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공익법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고, 공익법인에 의한 당해 사업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여 공익의 증진 및 활력 있는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단법인 : 제4조의 인정을 받은 일반사단법인을 말한다.
2. 공익재단법인 : 제4조의 인정을 받은 일반재단법인을 말한다.
3. 공익법인 :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을 말한다.
4. 공익목적사업 : 학술, 기예, 자선 그 밖에 공익에 관한 별표 각 호의 사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행정청) 이 법률에서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의 구분
에 따라,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로 한다.

1. 다음에 열거하는 공익법인 : 내각총리대신
 - 가. 둘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법인
 - 나. 공익목적사업을 둘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내에서 행하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한 법인
 - 다.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공익목적사업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행하는 법인
2. 전호의 공익법인 이외의 공익법인 : 그 사무소가 소재하는 도도부현의 지사

제 2 장 공익법인의 인정 등

제 1 절 공익법인의 인정

제 4 조(공익인정) 공익목적사업을 하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은 행정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 5 조(공익인정의 기준) 행정청은 전조의 인정(이하 “공익인정”이라 한다)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한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해 공익인정을 한다.

1. 공익목적사업을 주요한 목적을 할 것
2. 공익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리적 기초 및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3. 그 사업수행에 있어 사원, 평의원, 이사, 감사, 사용인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자에 대해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지 않을 것
4. 그 사업수행에 있어 주식회사 그 밖의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기부 그 밖의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다만, 공익법인에 대해 당해 공익법인이 하는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기부 그 밖의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투기적 거래, 고리의 용자 그 밖의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공공의 질서 내지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것
6. 그 공익목적사업에 대해 당해 공익목적사업에 관련되는 수입이

- 그 실시에 요하는 적정한 비용을 충당하는 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일 것
7. 공익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이하 “수익사업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등을 함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의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
 8. 그 사업활동에서 제15조의 공익목적사업비율이 100분의 50이상 이 될 것으로 예상될 것
 9. 그 사업활동에서 제16조제2항의 유희재산액이 동조 제1항의 제한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것
 10. 각 이사에 대해서 당해 이사, 그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관계(이러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당해 이사와 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이사의 합계수가 이사의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감사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11. 다른 동일한 단체(공익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이사 또는 사용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인 이사의 합계수가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감사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12. 회계감사인을 두고 있을 것. 다만, 당해 법인의 매사업연도의 수익, 비용, 손실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감정액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그 이사, 감사 및 평의원에 대한 보수 등(보수, 상여 그 밖에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받는 재산상의 이익 및 퇴직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임원의 보수 등 및 종업원의 급여, 당해 법인의 경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고액이 되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을 것.

14. 일반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사원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을 것
 - 나. 사원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 의결권의 행사조건 그 밖에 사원의 의결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당해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사원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을 것
 - (2) 사원이 당해 법인에 제공한 금전 그 밖에 재산의 가액에 따라 사원의 의결권에 다른 대우를 하지 않을 것
 - 다. 이사회를 두고 있을 것
15. 다른 단체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주식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당해 재산의 보유에 따라 다른 단체의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불가결한 특정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유지와 처분의 제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있을 것
17. 제2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공익인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이 공익법인일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공익목적취득재산잔액(제30조제2항의 공익목적취득재산잔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액의 재산을 당해 공익인정의 취소의 날 또는 당해 합병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법인 또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증여하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고 있을 것

- 가. 사립학교법 제3조의 학교법인
 - 나. 사회복지법 제22조의 사회복지법인
 - 다. 갱생보호사업법 제2조제6항의 갱생보호법인
 - 라.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제1항의 독립행정법인
 - 마. 국립대학법인법 제2조제1항의 국립대학법인 또는 동조 제3항의 대학공동이용관계법인
 - 바.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조제1항의 지방독립행정법인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에 열거하는 법인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
18.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유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법인 또는 전호 가부터 사에 열거하는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귀속시키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고 있을 것

제 6 조(결격사유) 전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은 공익인정을 받을 수 없다.

1. 이사, 감사 및 평의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가. 공익법인이 제29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공익인정의 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었던 날 이전 1년 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였던 자로서 그 취소의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나. 이 법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거나 형법 제204조, 제206조, 제208조, 제208조의3제1항, 제222조 내지 제247조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의 죄를 범하거나, 국세 내지 지방세에 관한 법률 중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 혹은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이런 세금의 환부를 받거나 이들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은 마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폭력단원(이하 이 호에서 “폭력단원”이라 한다)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제6호에서 “폭력단원 등”이라 한다)

2. 제29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공익인정이 취소되고, 그 취소의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
3.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반하고 있는 법인
4. 그 사업을 함에 있어 법령상 필요한 행정기관의 허인가 등(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의 허인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수 없는 법인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이 집행되고 있는 법인 또는 당해 체납처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
6. 폭력단원 등이 그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제 7 조(공익인정의 신청) ① 공익인정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1.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공익목적사업을 하는 도도부현의 구역(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주된 사무소 내지 분사무소의 소재지
3. 공익목적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수익사업 등의 내용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 관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사업수행에 법령상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허인가 등이 있었던 것 또는 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당해 공익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리적 기초를 증명하는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제5조제13호의 보수 등의 지급기준을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 8 조(공익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행정청은 공익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당해 사유의 유무에 대해 당해 각 호에 정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5조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조제3호, 제4호의 사유(사업수행에 법령상 행정기관의 허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당해 행정기관(이하 “허인가 등 행정기관”이라 한다)
2. 제6조제1호라목 및 제6호의 사유 : 행정청이 내각총리대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청장관, 도도부현지사인 경우에는 경시총감 또는 도도부현 경찰본부장(이하 “경찰청장관 등”이라 한다)
3. 제6조제5호의 사유 : 국세청장관, 관계 도도부현지사 또는 관계 시정촌장(이하 “국세청장관 등”이라 한다)

제 9 조(명칭 등) ① 공익인정을 받은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은 그 명칭 중의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의 명칭을 각각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한 것으로 본다.

- ② 전항에 따른 명칭변경의 등기신청서에는 공익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 ③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은 그 종류에 따라, 그 명칭 중에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 ④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이 아닌 법인은 그 명칭 또는 상호 중에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⑥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5조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공익인정의 공시) 행정청은 공익인정을 한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제11조(변경의 인정)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하려고 할 때에는 행정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익목적사업을 하는 도도부현의 구역(정관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주사무소 내지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분사무소의 신설 또는 폐지를 포함한다)
- 2. 공익목적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
- 3. 수익사업 등의 내용의 변경

② 전항의 변경인정을 받고자 하는 공익법인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전항의 신청서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제5조 및 제6조(제2호를 제외한다)는 제1항 각 호의 변경인정에 대해, 제8조제1호(흡수합병에 따라 당해 변경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 각 호)는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변경인정에 대해, 제10조는 제1항의 변경인정을 한 때에 각각 준용한다.

제12조 ① 행정청의 변경을 수반하는 변경의 인정에 관한 제11조제2항의 신청서는 변경 전의 행정청을 경유하여 변경후의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변경인정을 한 때에는 변경 후의 행정청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변경전의 행정청으로부터 사무의 인계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변경의 제출) 공익법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변경(합병에 수반하는 것을 제외한다)이 있었던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취지를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
2. 제11조제1항 단서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3. 정관의 변경(제11조제1항 각호의 변경 및 제2호의 변경에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행정청은 제1항제1호의 변경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었던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제 2 절 공익법인의 사업활동 등

제 1 관 공익목적사업의 실시 등

제14조(공익목적사업의 수입) 공익법인은 그 공익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목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적정한 비용을 충당하는 액을 넘는 수입을 얻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익목적사업비율) 공익법인은 매 사업연도에 공익목적사업비율(제1호에 열거하는 액의 동호부터 제3호까지에 열거하는 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익목적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내각부령에 따라 산정되는 액
2. 수익사업 등의 실시와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내각부령에 따라 산정되는 액
3.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서 내각부령에 따라 산정되는 액

제16조(유휴재산액의 보유제한) ① 공익법인의 매 사업연도 말일의 유휴재산액은 공익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수행한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내용 및 규모의 공익목적사업을 다음 해 사업연도에서도 계속하여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액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공익목적사업을 실시하기에 필요하였던 비용의 액(그 보유하는 자산의 상황 및 사업활동의 형태에 따라 당해 비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액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여 내각부령에 따라 산정한 액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유휴재산액”이란 공익법인에 의한 재산의 사용, 관리의 상황 또는 당해 재산의 성질에 비추어, 공익목적사업 또는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수익사업 등 그 밖에 업무 내지는 활동을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사용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 재산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7조(기부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공익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자는 기부모집에 관해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의 권유 또는 요구를 받고서 기부를 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해 계속하여 기부의 권유 또는 요구를 하는 행위
2. 난폭한 언동을 하거나 집요하게 기부의 권유 또는 요구를 하는 행위
3. 기부하는 재산의 사용방법을 오인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그 밖에 기부의 권유 또는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 2 관 공익목적사업재산

제18조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공익목적사업재산”이라 한다)을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다만,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인정을 받은 날 이후에 기부를 받은 재산(기부를 한 자가 공익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해야 할 뜻을 정한 재산을 제외한다)
2. 공익인정을 받은 날 이후에 교부를 받은 보조금 그 밖의 재산(재산을 교부한 자가 공익목적사업 이외를 위해 사용해야 할 뜻을 정한 재산을 제외한다)
3. 공익인정을 받은 날 이후에 행한 공익목적사업에 관련되는 활동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4. 공익인정을 받은 날 이후에 행한 수익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에 상당하는 재산
5.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재산을 지출함으로써 취득한 재산
6. 제5조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전 각호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공익인정을 받은 날 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동일 이후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표시한 재산

8. 전 각 호에 열거하는 것 이외에 당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을 하여 취득하거나 공익목적사업을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 3 관 공익법인의 회계 등의 특칙

제19조(수익사업등의 구분 경리) 수익사업 등에 관한 회계는 공익목적사업에 관한 회계로부터 구분하여 각 수익사업 별로 특별회계로서 경리해야 한다.

제20조(보수 등) ① 공익법인은 제5조제13호의 보수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그 이사, 감사 및 평의원에 대한 보수 등을 지급해야 한다.

② 공익법인은 전항의 보수 등의 지급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그러하다.

제21조(재산목록의 비치 및 열람 등) ① 공익법인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공익인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당해 공익인정을 받은 후 지체없이)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수지계산서 그 밖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당해 서류를 그 주된 사무소에, 그 사본을 그 분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② 공익법인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공익인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당해 공익인정을 받은 후 지체없이),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당해 서류를 5년간 그 주된 사무소에, 그 사본을 3년간 그 분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1. 재산목록

2. 임원등 명부(이사, 감사 및 평의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5조제13호의 보수 등의 지급기준을 기재한 서류

4.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서류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사람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따른 정보처리의 용도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공익법인의 업무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 제2항 각 호의 서류, 정관, 사원명부 및 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29조제1항(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9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계산서류 등(이하 “재산목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공익법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재산목록등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서면 또는 당해 서면의 사본에 대한 열람 청구

2. 재산목록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된 것의 열람 청구

⑤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은 임원등 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대해 당해 공익법인의 사원 또는 평의원 이외의 자로부터 동항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들에 기재되거나 기록된 사항 중, 개인의 주소에 관련되는 기록 또는 기록의 부분을 제외하여 동항의 열람을 시킬 수 있다.

⑥ 재산목록 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분사무소에 있어서의 제4항제2호의 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내각부령에 정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1항 중 “그 주된 사무소에, 그

사본을 그 분사무소”는 “그 주된 사무소”로 , 제2항 중 “그 주된 사무소에, 그 사본을 3년간 그 분사무소”는 “그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22조(재산목록 등의 제출 및 공개) ① 공익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경과 후 3개월 이내(제21조제1항의 서류에 대해서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 등(정관을 제외한다)을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익법인이 제출한 재산목록 등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열람 또는 등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임원 등 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대해 동항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들 기재된 사항 중, 개인의 주소에 관련되는 기재의 부분을 제외하여, 그 열람 또는 등사를 하도록 한다.

제23조(회계감사인의 권한 등)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인은 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07조제1항(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것 이외에 재산목록 그 밖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감사한다. 이 경우에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에 해당 감사의 결과를 같이 기재하거나 기록해야 한다.

제 4 관 합병 등

제24조(합병 등의 신고)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취지를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1. 합병(당해 합병에 관해 제11조제1항의 변경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제25조제1항의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당해 사업의 양도에 관해 제11조

제1항의 변경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익목적사업의 전부폐지

② 행정청은 전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제25조(합병에 따른 지위승계의 인가) ① 공익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이 되는 신설합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당해 공익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하나)은 당해 신설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이 당해 신설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공익법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 행정청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신설법인이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인가를 한다.

1. 제5조 각 호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

③ 제1항의 인가가 있었던 경우에는 신설법인은 그 성립한 날로부터 당해 신설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공익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는 제1항의 인가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7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제1호에 대해서는 신설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공익법인 및 신설합병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관련되는 것,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설법인에 관련되는 것)”으로, 제1항제2호 중 “정관”은 “정관의 안”으로, 제7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제1호의 정관의 안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설법인에 관련되는 것)”으로, 제2항제1호 중 “정관”은 “신설합병계약서 및 정관의 안”으로, 제12조제1항 중 “전조 제2항”은 “제25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인가를 받아 합병으로 소멸하는 공익법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신설법인에 대한 제18조 및 제30조제2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공익인정을 받은 날”은 “그 성립의 날”로, 제18조제5호 중 “전 각 호”는 “전 각 호 및 제7호”로, 제18조제7호 중 “공익인정을 받은 날의 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동일 이후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익목적사업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인 취지를 표시한 재산”은 “그 성립시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계승한 재산으로서 당해 소멸하는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재산이었던 것”으로, 제30조제2항제1호 중 “가 취득한”은 “가 합병으로 승계하거나 취득한”으로, “제18조제6호에 열거하는 재산으로서”는 “제25조제5항에 따라 적용하는 제18조제7호에 열거하는 재산로서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공익법인”으로, “것”은 “것(당해 공익법인이 동일 이후에 제18조제7호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표시한 것을 제외한다)”로, 제2항제2호 중 “공익인정을 받은 날”은 “그 성립의 날”로, 제2항제3호 중 “공익인정을 받은 날”은 “그 성립의 날”로, “정하는 것”은 “정하는 것 및 합병으로 소멸하는 공익법인이 공익인정을 받은 날 이후에 그 공익목적사업을 하기 위해 소비하거나 양도한 공익목적사업재산 이외의 재산 및 동일 이후에 당해 공익법인이 그 공익목적사업의 실시를 수반하여 부담한 공조공과외 지불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해산의 신고 등) ① 공익법인이 합병 이외의 이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당해 해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항을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② 청산인은 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233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잔여재산의 인도계획을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당해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그러하다.
- ③ 청산인은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④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었던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제 3 절 공익법인의 감독

- 제27조(보고 및 감사)** ① 행정청은 공익법인의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해, 그 운영조직 및 사업활동의 상황에 관해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공익법인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 운영조직 및 사업활동의 상황이나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게 하며,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권고, 명령 등)** ① 행정청은 공익법인에 대해 제2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전항의 권고를 한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고의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 ③ 행정청은 제1항의 권고를 받은 공익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해, 그

권고에 관련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제3항의 명령을 한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⑤ 행정청은 제1항의 권고 및 제3항의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구분에 따라, 당해 사유의 유무에 대해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5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6조제3호, 제4호, 제29조제2항제3호의 사유(사업수행에 법령상 허인가등 행정기관의 허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허인가등 행정기관
2. 제6조제1호가목 또는 제6호의 사유 : 경찰청장관 등
3. 제6조제5호의 사유 : 국제청장관 등

제29조(공익인정의 취소) ① 행정청은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공익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1. 제6조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공익인정, 제11조제1항의 변경인정 또는 제25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8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4. 공익법인으로부터 공익인정의 취소신청이 있었던 때

② 행정청은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공익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된 때
2. 제2절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반한 때

③ 제28조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인정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익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익인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공익법인은 그 명칭 중의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각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정관의 변경을 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익인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당해 공익법인의 명칭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명칭변경 등기의 촉탁서에는 당해 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유와 관련되는 처분을 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30조(공익인정의 취소 등에 수반하는 증여) ① 행정청이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익인정의 취소를 한 경우 또는 공익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이 공익법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제5조제17호에서 정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익인정의 취소일 또는 당해 합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익목적취득재산잔액에 상당하는 재산의 증여에 관련되는 서면에 따른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국가, 도도부현지사가 행정청일 경우에는 당해 도도부현이 당해 공익목적취득재산잔액에 상당하는 금전에 대해 동호에 규정하는 정관에서 정하는 증여를 당해 공익인정의 취소를 받은 법인 또는 당해 합병으로 소멸하는 공익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제4항에서 “인정취소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취지의 서면에 따른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당해 공익인정의 취소일 또는 당해 합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공익목적취득재산잔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해 동호에 규정하는 정관으로 정하는 증여에 관련되는 서면에 따른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서의 잔여부분

에 대해서도 같다.

② 제1항의 “공익목적취득재산잔액”이란 제1호의 재산부터 제2호의 재산을 제외한 잔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으로부터 제3호의 액을 공제한 액을 말한다.

1. 당해 공익법인이 취득한 모든 공익목적사업재산(제18조제6호의 재산에 있어서는 공익인정을 받은 날 이전에 취득한 것을 말한다)
2. 당해 공익법인이 공익인정을 받은 날 이후에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양도한 공익목적사업재산
3. 공익목적사업재산 이외의 재산으로서 당해 공익법인이 공익인정을 받은 날 이후에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양도한 것 및 동일 이후에 공익목적사업의 실시를 수반하여 부담한 공조공과의 지분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서 정한 액의 산정의 세목 그 밖의 공익목적취득재산잔액의 산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내각부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인정취소 법인 등에 대해,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공익목적취득재산잔액 및 제1항에 따라 당해 인정취소 법인 등과 국가 또는 도도부현 사이에 당해 공익목적취득재산잔액 또는 그 일부에 상당하는 액의 금전의 증여에 관련되는 계약이 성립된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⑤ 공익법인은 제5조제17호에서 정하는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31조(행정청에 대한 의견) 다음 각 호의 자는 공익법인에 대해 각각 당해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공익법인에 대해 적당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해 그 취지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허인가 등 행정기관 : 제5조제1호, 제2호,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유 또는 제6조제3호, 제4호, 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

하는 사유(사업수행에 법령상 허인가 등 행정기관의 허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경찰청장관 등 : 제6조제1호라목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
3. 국세청장관 등 :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제 3 장 공익인정 등 위원회 및 도도부현의 합의제기관

제 1 절 공익인정 등 위원회

제 1 관 설치 및 조직

제32조(설치 및 권한) ① 내각부에 공익인정 등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33조(권한의 행사)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그 직권을 수행한다.

제34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그 중 4인 이내는 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위원의 임명) ① 위원은 인격이 고결하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법률, 회계 또는 공익법인에 관한 활동에 관해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양의원(兩議院)의 동의를 거쳐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회의 폐회 또는 중의원의 해산으로 양의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임명 후 최초의 국회에서 양의원의 사후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 양의원의 사후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즉시 그 위원을 파면해야 한다.

제3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신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직무상의 의무위반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파면되지 않는다.

제38조(위원의 파면) 내각총리대신은 위원이 제37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파면해야 한다.

제39조(위원의 복무) ①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직에서 물러난 자도 그러하다.

② 위원은 재임 중 정당 그 밖의 정치적 단체의 임원이 되거나 적극적으로 정치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상근의 위원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고서 다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영리사업을 운영하거나 그 밖에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40조(위원의 급여) 위원의 급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41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고, 위원의 호선으로 이를 정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42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장리한다.

제 2 관 자문 등

제43조(위원회에 대한 자문) ① 내각총리대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8조제5항(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인가 등 행정기관의 의견(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유무에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자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인정의 신청, 제11조제1항의 변경인정의 신청, 제25조제1항의 인가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신청을 한 법인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행정절차법 제7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인정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8조제1항의 권고, 제28조제3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공익인정의 취소(이하 “감독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감독처분 등을 받는 공익법인이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
 - 나. 제13조제1항,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등의 제출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감독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다. 제46조제1항의 권고에 따라 감독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② 내각총리대신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해야 한

다. 다만, 위원회가 자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단서, 제15호 단서, 제17호 사목, 제51조에서 준용하는 제43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별표 제23호의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13호, 제15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및 제6호, 제11조제2항, 제3항, 제13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제15조 각호, 제16조, 제18조 단서 및 제4호, 제7호 및 제8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2항제3호(제25조제5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 제31조제1항, 제46조제2항의 내각부령의 제정 또는 개폐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른 지시를 하려는 경우

③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제1호의 처분, 제28조제3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2항에 따른 공익인정의 취소에 대한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는 경우

2. 이의신청을 한 일반사단법인이나 일반재단법인 또는 공익법인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이유에 따른 감독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제44조(답신의 공포 등) ① 위원회는 자문에 대한 답신을 한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답신을 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에 대해, 당해 답신에 근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송부 등) ① 내각총리대신은 제13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신고에 관련되는 서류의 사본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목록 등의 사본을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제31조에 따라 허인가등 행정기관이 진술한 의견(공익법인이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련되는 의견을 제외한다)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위원회에 자문하지 않고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그 취지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1. 공익인정의 신청, 제11조제1항의 변경인정의 신청 또는 제25조제1항의 인가신청에 대한 처분(행정절차법 제7조에 따른 거부를 제외한다)
2. 감독처분 등(제46조제1항의 권고에 근거한 감독처분 등을 제외한다)
3. 제43조제2항제1호의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 및 동호의 내각부령의 제정 또는 개폐
4. 제43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제외한다)
5. 제60조에 따른 지시

제46조(위원회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45조제1항, 제2항, 제59조제1항에 따라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징수, 검사 또는 질문을 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제2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제1항의 권고, 제3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공익인정의 취소 그 밖의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내각총리대신

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권고를 한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권고의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권고를 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에 대해 당해 권고에 따라서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 관 잡 칙

제47조(자료제출 그 밖의 협력)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설명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사무의 처리상황의 공표) 위원회는 매년 그 사무의 처리상황을 공표해야 한다.

제49조(정령으로의 위임)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 2 절 도도부현에 설치되는 합의제의 기관

제50조(설치 및 권한) ① 도도부현에 이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게 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심의회 그 밖의 합의제의 기관(이하 “합의제의 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합의제의 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한다.

제51조(합의제의 기관에 대한 자문) 제43조(제2항을 제외한다)는 도도부현지사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3조제1항 중 “첨부하여, 위원회”는 “첨부하여 제50조제1항의 합의제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합의제의 기관”이라 한다)”로, 제1항 단서 중 “위원회가”는 “합의제의 기관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로, 제1항제2호다목 중 “제46조제1항”은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46조제1항”으로, 제50조제3항 중 “위원회에”는 “합의제의 기관에”로, 제3항 단서 중 “위원회”는 “합의제의 기관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52조(답신의 공포 등) 제44조는 합의제의 기관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4조제2항 중 “내각총리대신”은 “도도부현지사”로 한다.

제53조(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통지 등) ① 도도부현지사는 제60조에 따른 지시가 당해 도도부현지사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합의제의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제45조(제3항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는 도도부현지사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5조제1항 중 “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의 합의제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합의제의 기관”이라 한다)”로, 제45조제2항 및 제3항 중 “위원회”는 “합의제의 기관”으로, 제3항제2호 중 “제46조제1항”은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으로, 제3항제4호 중 “제43조제3항”은 “제51조에서 준용하는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54조(합의제의 기관에 의한 권고 등) 제46조는 합의제의 기관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6조제1항 중 “제45조제1항, 제2항”은 “제5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44조제1항, 제2항”으로, “제59조제1항”은 “제59조제2항”으로, 제46조제1항 및 제3항 중 “내각총리대신”은 “도도부현지사”로 한다.

제55조(자료제출 그 밖의 협력) 제47조는 합의제의 기관에 대해 준용한다.

제 4 장 잡 칙

제56조(협력의뢰) 행정청은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청, 공공단체 그 밖의 자에 조회하거나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제57조(정보의 제공) 내각총리대신 및 도도부현지사는 공익법인의 활동상황, 공익법인에 대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하고, 필요한 통계 그 밖의 자료의 작성을 함과 동시에 공익법인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의 정비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인터넷 그 밖의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이용을 통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제58조(세제상의 조치)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목적사업에 관련되는 활동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당해 활동을 촉진하면서 적정한 과세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공익법인 및 이에 대한 기부를 하는 개인 및 법인에 관한 소득과세에 관해, 소득세, 법인세 및 상속세 그리고 지방세의 과세에 대한 필요한 조치 그 밖의 소요의 세제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제59조(권한의 위임 등) ① 내각총리대신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권한(제6조 각 호의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조사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을 위원회에 위임한다.
② 행정청이 도도부현지사인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중 “행정청”은 “제50조제1항의 합의제의 기관”으로, “그 직원”은 “그 서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60조(도도부현지사에 대한 지시)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 및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른 사무의 실시에 관하여 지역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도부현지사에 대해, 제28조제1항의 권고, 제3항의 명령, 제29조제2항의 공익인정의 취소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61조(정령으로의 위임)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별 칙

제6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공익인정, 제11조제1항의 변경인정, 제25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자
2. 제11조제1항의 변경인정을 받지 않고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변경(행정청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에 한한다)을 한 자
3. 제11조제1항의 변경인정을 받지 않고서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변경(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에 한한다)을 한 자

제6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에 위반하여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를 그 명칭 또는 상호중에 사용한 자
2. 제9조제5항에 위반하여 다른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한 자

제6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제2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청

서 또는 제7조제2항 각 호(제2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서류에 허위기재를 하여 제출한 자

2. 제11조제2항의 신청서 또는 동조 제3항의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출한 자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하여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을 비치하지 않거나 이에 기재 또는 기록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기록을 한 자

제65조 ① 법인(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법인이나 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인의 업무에 관해 전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인에 대해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해 전항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대해 법인이 아닌 단체를 대표하는 외에도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해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5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2. 제22조제1항에 위반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출한 때
3. 제27조제1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고, 방해하고, 기피하고 동항에 따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때

부 칙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5조제1항 중 양의원의 동의를 얻는 것에 관한 부분 : 공포의 일
2. 제3장(제35조제1항(양의원의 동의를 얻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43조제1항, 제2항제2호, 제3항, 제45조제1항, 제2항, 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46조, 제48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를 제외한다.) 및 다음 항의 규정 : 공포의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

제 2 조(최초의 위원의 임명) 전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규정의 시행 후 최초에 임명되는 위원회의 위원의 임명에 대해, 국회의 폐회 또는 중의원의 해산을 위해 양의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 3 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후 적당한 시기에 이 법률의 시행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별 표(제2조 관계)

1. 학술 및 과학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장애인, 생활곤궁자 또는 사고, 재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고령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근로의욕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공중위생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7. 아동 또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8.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교육, 스포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하거나 풍부한 인간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10. 범죄의 방지 또는 치안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11. 사고 또는 재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12. 인종, 성별 그 밖의 사유로 부당한 차별 또는 편견의 방지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13.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존중 또는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14. 남녀공동참가사회의 형성 그 밖에 보다 좋은 사회의 형성을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15. 국제상호이해의 촉진 및 개발도상에 있는 해외의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16. 지구환경의 보전 또는 자연환경의 보호 및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17. 국토의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18. 국정의 건전한 운영의 확보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19.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0.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기회의 확보 및 촉진 및 그 활성화에 따른 국민생활의 안정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1.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물자, 에너지 등의 안정공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2. 일반 소비자의 이익옹호 또는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3. 그 밖에 공익에 관한 사업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록 2 】

공익인정등위원회령⁵¹⁾

내각은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등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9호) 제49조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제 1 조(전문위원) ① 공익인정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사항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당해 전문사항에 관해 충분한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는 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그 자의 임명에 관련된 당해 전문사항에 관한 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해임되는 것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 2 조(부회) ① 위원회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부회를 둘 수 있다.

② 부회에 속하는 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부회에 회장을 두고, 당해 부회에 속하는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④ 회장은 당해 부회의 사무를 장리한다.

⑤ 회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회에 속하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3 조(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최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51) 公益認定等委員会令(2007年3月26日, 정령 제64호)

부 록

④ 전항은 부회의 의사에 준용한다.

제 4 조(사무국차장) ① 위원회의 사무국에 사무국차장 1인을 둔다.

② 사무국차장은 사무국장을 도와 사무를 정리한다.

제 5 조(사무국의 내부조직의 세목) 전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 사무국의 내부조직의 세목은 내각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조(위원회의 운영) 이 정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의사 절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 물어 정한다.

【 부록 3 】

공익인정등위원회사무국조직규칙⁵²⁾

「공익인정등위원회령」(2007년 정령 제64호) 제5조에 따라 공익인정등위원회사무국조직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1 조(사무국에 두는 과 등) 공익인정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국에 총무과, 심사감독관 8인(그 중 6인은 관계있는 다른 직을 가지는 자로써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및 기획관 1인을 둔다.

제 2 조(총무과의 소관사무)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장의 관인 및 위원회인의 보관
2. 사무국 사무의 종합조정
3. 위원회의 인사
4. 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회계 및 회계감사
5. 위원회소속 물품 관리
6. 공문서류의 접수, 발송, 편집 및 보존
7. 위원회가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
8. 위원회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9. 홍보
10.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9호),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50호)(이하 「인정법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대한 조사심의, 인정법 등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 징수, 검

52) 公益認定等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2007년 3월26일, 내각부령 제22호)

부 록

사 또는 질문 및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심사감독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전 각호에 정하는 것 이외에 사무국 사무로서 다른 소관에 속하지 않는 것

제 3 조(심사감독관의 직무) 심사감독관은 명을 받아서, 인정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대한 조사심의, 인정법 등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 징수, 검사 또는 질문 및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 4 조(기획관) 기획관은 명을 받아서, 사무국의 사무 중 특정사항의 조사, 기획 및 입안을 한다.

부 칙

이 정령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록 4 】

공익인정등위원회운영규칙⁵³⁾

제 1 조(총칙) 공익인정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절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9호) 및 「공익인정등위원회령」(2007년 정령 제64호)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에 대해 미리 일시, 장소, 의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에 미리 통지한 이후, 문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에 대해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사를 정리한다.

제 3 조(자료제출 그 밖의 협력) 위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회의로의 출석을 요구하고,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설명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제 4 조(자문 및 답신 등) ① 위원회에 대한 자문은 내각총리대신은 문서로써 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3) 公益認定等委員会運営規則、2007년 4월 2일, 公益認定等委員会決定第1号

② 위원회가 내각총리대신에 대해 하는 답신 및 권고는 문서로써 한다.

제 5 조(의사록의 작성) ① 회의의 의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자의 씨명
3. 의제
4. 심의경과
5. 의결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의사록은 당해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확인을 얻어 작성한다.

제 6 조(회의의 공개) 회의는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한다.

제 7 조(의사록 등의 공개) ① 회의의 의사록 및 배포자료(이하 “의사록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한다.

1.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2.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2호 및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의사록등을 공개함으로써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권리,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의의 의사록을 비공개하는 경우는 그 이유를 공표함과 동시에, 의사요지를 작성하고, 당해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확인을 얻어 공개한다.

④ 회의의 의사록을 공개하는 경우는 공개되기 전까지, 의사요지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당해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확인을 얻어 공개한다.

제 8 조(잡칙) 이 규칙에 정하는 것 이외에, 의사의 절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